

공동 토론회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

주최 | 의제27 / 참여사회연구소 / 코리아연구원

일시 | 2008. 8. 18. 오후 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프로그램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

13:30 기조강연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14:00 1부

사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1 일본의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건국 60년'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발표2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징과 영향

박찬표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발표3 대한민국헌법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주체와 기원을 중심으로-

서희경 진실화해위원회 팀장

토론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16:00 종합토론

사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일본의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건국 60년’

한시준 /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1. 머 리 말

5천년 가까운 오랜 역사를 유지해온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 이웃나라가 우리 역사를 잘못 서술하거나 가르치면, 가만있지 않는다. 1982년 일본이 침략을 ‘진출’로 표현한 교과서를 발행하자, 한 국민 전체가 일어나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편입한다며, 크게 흥분하기도 하였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다. 현 정부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건국60년’과 ‘건국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60년’이라며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8월 15일 ‘광복절’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한다. ‘건국60년’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것이고, ‘건국절’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것보다 건국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10년 이후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왜곡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국60년’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하는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건국60년’이란 주장이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건국60년’이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실상, 또 그것을 주장하는 계기가 미국의 예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은 ‘건국’보다 ‘독립’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자 한다.

2. 근거도 논리도 없는 ‘건국 60년’

올해가 ‘건국60년’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이를 기념하는 각종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올해가 왜 ‘건국60년’이 되느냐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제대로 없다. 최소한도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언제 어떻게 정해졌으며, 우리 역사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된 것은 언제이고, 민주공화제는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에서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와 논리도 정립해 놓지 않은 채, ‘건국60년’이라며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학술적으로 그 근거와 논리를 정립해 놓은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신문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하여 ‘건국60년’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글들을 발표한 정도였다. 그 중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학에 갔다가 미국의 ‘건국기념일’ 행사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며, 우리도 미국과 같이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중략)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건국 그 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 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넘기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면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¹⁾

길게 인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2년 전에 이 글을 통해 주장한 것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가 '건국60년'이고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근거나 논리가 대체로 이 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글을 쓴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국60년' 사업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문제는 이 글이 대학교수가 쓴 글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논리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근거로 든 것도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보스턴에서 미국의 '건국기념일' 행사를 보았다고 했지만, 미국에는 '건국기념일' 행사가 없다. 그가 본 것은 '독립기념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제헌헌법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다거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것, 또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 등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자.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채용한 것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²⁾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이때 처음 결정되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제(帝)를 민(民)으로 바꾼 것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시에 제정한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였다.³⁾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도 이미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에 들어 있다. 수립 당시 10개조로 된 간단한 헌장을 제정하면서도 남녀평등과 함께 인민의 자유(언론·출판·집회) 권리(선거권·피선거권) 의무(교육·납세·병역) 등을 규정해 놓았다. 이후 이를 보완하여 개정한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거주·언론·출판·저작·신앙·집회·시위·통신'등을 비롯하여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 등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까지 구비하였다.⁴⁾

독립운동 과정에서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단체나 정당에서는 그것을 '강령'이라는 것으로 마련해 놓고 있었다. 임시정

1) 이영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년 7월 31일자).

2) 金榮秀, 『韓國憲法史』, 학문사, 2000, 226 - 228쪽.

3) 「大韓民國臨時憲章」(韓詩俊 편,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41쪽).

4)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국가보훈처, 1989), 682 - 683쪽.

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는 광복 후 국민전체가 균등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경제·교육으로 나누어 마련해 놓았다.⁵⁾

이렇듯 몇 가지만 확인해 보아도,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난다.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건국60년’이라는 주장을 펴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 ‘건국60년’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논리가 대개 이러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가 대한민국 탄생 60주년임을 주장하는 또다른 글이 있다. 글 쓴 이는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왔다”거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국호에서 제국을 민국으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꾼 것이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임시정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금이 간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올해가 대한민국 탄생 60주년이라고 주장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략) 동양사회에서 환갑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람에게 있어 환갑은 축하할 일로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경사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전환점이다. 나라에 있어서도 환갑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사스런 해에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제환경은 세계화이다. 이같은 세계화 시대에 실용주의로 무장하고 (중략) 올해는 대대적인 국민 축제로 나라의 환갑날을 맞으면 싶다⁶⁾

올해가 대한민국 탄생 60년이 되는 해라고 하였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환갑이란 사람이나 나라에 있어 축하할 일인데, 공교롭게도 나라가 환갑을 맞는 해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대대적으로 국민 축제를 하자고 한다. 이러한 ‘환갑론’은 이후 ‘건국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논리처럼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 민간단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란 대주제로 ‘건국60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모두 17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고, 올해가 왜 ‘건국60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논리라고 하면, ‘초청의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趙東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국가보훈처, 1989) ; 韓詩俊,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光復後 民族國家 建設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등의 연구가 있다.

6) 「훼손된 국가 정통성 되살아났다」 (《동아일보》 2008년 4월 24일자).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을 선포한지 60주년을 맞습니다. 그것은 비단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크게 경축하고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간 양극대치의 틈바귀에서 새로 출범한 나라로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모두 성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서 60주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환갑이란 삶의 한바퀴가 완성되고 희망찬 새로운 한 주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8.15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하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⁷⁾

첫 마디부터 문제가 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였고, 올해가 60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이었다. 당시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정부 수립 선포식장에 내건 현수막에도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이라고 하였다. 생일이 언제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환갑이라며 환갑잔치를 벌이자는 식이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올해를 '건국60년'으로 보는 근거와 논리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학술회의 대주제로 내건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란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 역사에서 '1948년의 대한민국이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탄생되었다'는데 있는 것 같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올해를 '건국60년'으로 보는 논리라고 하겠다.

'건국60년'과 '건국절'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나 논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는 것,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세웠다는 것,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7)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초대합니다', 2008. 7. 23-24.

3. 성립될 수 없는 ‘건국60년’

‘건국60년’과 ‘건국절’을 제정하지는 주장은 역사적·법률적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언제 어떻게 정해져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는지 하는 문제만 검토해보아도, 그것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정해진 것은 독립운동 과정에서였다.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근대에 들어와 개화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대체로 입헌군주제로 모아지고 있었다.⁸⁾ 이후 1910년대에 독립운동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는 1917년 7월 중국 상해에서 朴殷植·申圭植·趙素昂 등이 국내 외에 흩어져 있는 전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 「大同團結宣言」이다.

故로 庚戌年 隆熙皇帝의 主權拋棄난 卽我國民同志에 對한 默示的 禪位이니 我同志난 當然히 三寶를 繼承하야 統治할 特權이 잇고 또 大統을 相續할 義務가 有하도다. 故로 二千萬의 生靈과 三千里의 舊疆과 四千年의 主權은 吾人同志가 相續하였고 相續하난 中이오 相續할 터이니 吾人同志난 此에 對하야 不可分の 無限責任이 重大하도다. (중략) 今茲吾人同志난 內外情勢에 感 한바이 深切하야 法理上 精神上으로 國家相續의 大義를 宣布하야)

이는 국가의 주권을 국민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논리이다. 그 논리는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을 군주인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주권을 선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주가 행사하고 있던 주권을 국민이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제 법리상·정신상으로 국가가 상속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대한제국의 ‘帝’를 ‘民’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가진 정부,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것은 1919년이였다. 3월 1일 “조선은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하노라”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그 독립국임을 상징하는 기구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8)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 구상과 공화제」, 『역사상의 공화정 만들기와 국가 만들기』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2008, 5. 30), 70 - 74.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島山安昌浩資料集』 3, 1992, 235 - 236쪽.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을 먼저 구성하고, 여기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 수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요즘 국회와 같은 것이다.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정부의 관제와 각원들을 선출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¹⁰⁾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해방 때까지 정부의 조직을 유지 운영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하고 발전시켜 왔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1948년 8월 15일 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는 새롭게 건국한 것이 아니었다.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하여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에서 수립되었다.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개원하고, 여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정부를 조직한 것이다.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 『制憲國會速記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제헌국회에서는 개원식에서부터 임시정부를 재건설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제헌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 民國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수립할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략)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職務와 權位를 行할 것이니 먼저 憲法을 制定하고 大韓獨立民主政府를 再建設하려는 것입니다. (중략) 이 國會에서 建設되는 政府는 卽己未年에 서울에서 樹立된 民國의 臨時政府의 繼承에서 이 날이 二十九年만에 民國의 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公布하며 民國年號는 己未年에서 起算할 것이요¹¹⁾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계승’ ‘재건설’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연호도 1919년부터 시작할 것이라 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정식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제헌헌법 전문에 이 사실을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후략)¹²⁾

10) 『臨時議政院紀事錄 第1回』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2005, 16 - 19쪽).

11) 『國會開院式 開會辭』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15, 1998, 90 - 92쪽).

이는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수립한 정부의 수립근거를 밝혀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민주독립국가는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을 일컫는 것이다. 결국 제헌국회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은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한 것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두 번 수립되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후 1948년 8월 15일 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뒤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수립한 당사자들이나, 제헌헌법에서 앞의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어떤 과정으로 수립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건국60년’과 ‘건국절’이 성립될 수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하면¹³⁾, ‘건국60년’과 ‘건국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물론이고, 한 국가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달리 쓴다.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이 光武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순종이 즉위해서는 隆熙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률적으로 보아도 ‘건국60년’과 ‘건국절’은 성립될 수 없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 것’이라고, 정부의 수립 근거를 밝혀 놓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후략)”라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한 것임과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1948년에 건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역사인식으로 보아도 ‘건국60년’과 ‘건국절’은 성립될 수 없다. 쉬운 예를 들어 본다. 고려대학교는 2005년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다. 1905년 이 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부터 연원을 따졌기 때문이다. 보성전문학교는 설립 이후 천도교 손병희의 손을 거쳐, 1932년 김성수가 인수하였다. 학교 이름도 보성법률상업학교·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바뀌었다가, 해방 후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청 문교부로부터 고려대학

12) 「大韓民國憲法 前文」(《官報》 제1호, 대한민국정부공보처, 대한민국30년 9월 1일).

1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후, 大韓民國政府公報處에서 정부의 《官報》 제1호를 발행하였다. 여기에 발행일자를 “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이라고 하였다.

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¹⁴⁾ 설립자도 다르고, 교명도 달랐지만, 고려대는 그 연원을 보성전문학교에 두고 있다. 1946년을 건학을 출발로 삼지 않는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1946년 8월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연세대는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에¹⁵⁾, 이화여대는 1886년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에 연원을 두고 있다¹⁶⁾.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조선·동아일보는 1920년 3월 5일과 4월 1일에 창간되었다. 이후 두 신문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하였고, 1940년 8월에는 강제로 폐간을 당하여 5년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사주가 방응모로 바뀌는 변화도 있었다. 두 신문은 해방 후 다시 발행되었다. 조선은 1945년 11월 23일부터, 동아는 12월 1일부터 발행을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동아일보는 해방 후 복간된 날에 연원을 두지 않는다. 1920년을 창간일로 하고 있다.

누구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그리고 조선·동아일보가 역사를 과장하거나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역사인식이다. 1919년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같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란 정치이념과 체제도 같고, 초대 대통령이 모두 이승만이었던 것도 같고, ‘대한민국’이란 연호도 같이 썼다. 그런 데도 ‘건국60년’과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4.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는 ‘건국60년’

‘건국60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국60년’을 주장하는 주류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다. 여기에 이승만을 ‘건국대통령’ ‘국부’로 추앙하려는 세력이 합세하고 있다. 이들의 저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건국60년’은 우리 역사를 단절시키고, 축소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우선, ‘건국60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는 역사왜곡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부터 식민지배를 거쳐 해방 때까지 전민족이 일

14) 고려대학교90년지편찬위원회, 『高麗大學校九十年誌』, 1995, 292쪽.

15)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 1985.

16)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1994, 49 - 51쪽.

어나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에 치고한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되었고, 해방 때까지 정부의 조직을 유지 운영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켜 왔다. ‘건국60년’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건국60년’은 대한민국 89년의 역사를 60년으로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 그리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한 것은 1919년이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1948년에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건국60년’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만 인정한다는 것으로, 89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60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셋째, ‘건국60년’은 1910년에서 1947년까지의 역사를 공백화시키고, 이를 우리 역사에서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다.

5천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 한민족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를 세웠고, 그것이 망하면 또다시 국가를 세우면서 민족사의 맥을 이어왔다.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것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하면, 1910년부터 1947년까지 한민족의 역사는 공백기나 다름없다. 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

넷째, ‘건국60년’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은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다. 『제헌국회속기록』 어디에도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부수립 선포식에서도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이라고 하였다.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한 일이 없는데, 그것을 왜곡하여 ‘건국60년’이라 하고 있다.

다섯째, 이승만을 ‘건국대통령’ ‘국부’로 추앙하기 위해 ‘건국6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승만의 역사의식조차도 왜곡하고 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할 때부터, 제헌국회에서 수립하는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켰고, 그 내용을 제헌헌법 전문에 명문화시켰다. 이 과정이 제헌국회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승만은 제헌헌법안 제2독회에서 헌법전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

였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① 여기서 우리가 憲法劈頭에 前文에 더 써넣을 것은 「우리들 大韓國民은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民族으로서 己未年三一革命에 蹶起하여 처음으로 大韓民國政府를 世界에 宣布하였으므로 그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自主獨立의 祖國再建을 하기로 함」 이렇게 써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②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꼭대기에 이런 意味의 文句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三一革命의 事實을 發布하여 歷史上에 남기도록 하면 民主主義라는 오날에 있어서 우리가 自發的으로 日本에 對해 싸워가지고 입때 盡力해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以後의 우리 同胞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중략) 이것이 나의 要請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¹⁷⁾

이승만은 그 표현을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다’는 문구를 제헌헌법 전문 맨 앞에 넣자고 하였다.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요청하고 부탁한 것은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주적으로 수립한 정부’인데,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새로운 ‘건국’을 한다면, 그 ‘건국’은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것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역사의식이나¹⁸⁾ 그 뜻도 모른채, 아니면 이승만의 그것조차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건국60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5. ‘독립’ 보다 ‘건국’ 을 중요시하는 ‘건국60년’

우리 민족처럼 식민지 지배를 당하였다가 독립하여 국가를 세운 민족이 많다. 그렇지만 ‘독립’보다 ‘건국’을 중요시하고 있는 민족은 없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 독립하여 국가를 세우는 일, 세운 국가를 지키는 일, 그 중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독립’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독립’보다 ‘건국’을 더 중요시 하자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17) 大韓民國國會, 『制憲國會速記錄』 1, 1987, 348쪽.

18) 柳永益은 「李承晩 國會議長과 大韓民國 憲法 制定」(『歷史學報』 189, 역사학회, 2006)이란 논문을 통해 이승만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로써 역사적의식이 남달리 강했던 이승만은 남한에 세워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한반도의 중앙정부라는 사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헌법 전문에서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다”라 하고 있다.

바꾸자고 한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미국에 ‘건국기념일’이 있다거’건국대통령’이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건국된 나라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미국이 영국에 대해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오늘의 미합중국을 건국하기까지 거친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은 1773년 ‘보스턴차 사건’을 계기로, 민병대를 조직하여 영국에 저항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민병대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¹⁹⁾ 1775년 5월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한 대륙연합군을 조직하였다. 영국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3만 여명의 원정군을 파견하였고,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하고,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안을 만들었다. 대륙회의는 초안의 일부분을 수정한 후, 독립선언을 가결하고 7월 4일 “연합한 모든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들이며 또 마땅히 그러한 국가들이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독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의 독립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가 동맹을 맺고 의용군과 해군을 보내와 전투에 참여하였고, 영국의 해상봉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러시아·덴마크·네덜란드·포르투갈 등이 가입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내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영국이 전쟁이 어렵게 되자 식민지 미국과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영국은 식민지 측 대표인 벤저민 프랭클린·존 애덤스 등과 교섭하여 가조약을 맺었고, 1783년 9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식으로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국 13개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787년 5월 제헌회의라 불리는 필라델피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을 건국하기 위한 헌법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13개주의 대표들이 헌법안을 토대로 타협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9월 17일 전문과 7조 21절로 이루어진 헌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헌법에 의해 1789년 미합중국을 건국하였다. 1월 입법부인 상원과 하원을 구성하기 위한 의원선거가 각주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4월 1일 하원을, 4월 6일 상원을 개원하

19) 이주영, 『미국사』 (완전 개정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6, 68쪽. 이하 미국의 독립전쟁과 헌법제정, 그리고 미합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주영의 『미국사』와 이보형의 『미국사개설』 (일조각, 2005)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였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대륙연합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선출하였고, 4월 30일 뉴욕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13개주가 연합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탄생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미합중국을 건국한 과정은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과 거의 같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1945년 8월 15일 해방	1783년 9월 3일 독립
1945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1787년 5월 25일 제헌회의 개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1787년 9월 17일 헌법안 통과
1945년 8월 15일 정부 수립	1789년 4월 30일 미합중국 건국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한국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합중국을 건국한 미국은 그 과정이 거의 같다. 독립선언, 독립전쟁, 독립, 정부수립(건국)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미국인들은 '건국'보다 '독립'을 더 중요시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기념하는 것은 '독립기념일'이다. 미합중국을 건국한 1789년보다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 그 날을 더 중요시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건국 연원을 1776년부터 따지고,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놓고, 이 날을 'Fourth of July'라 부르며,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날로 기념하고 있다.

6. 맺 음 말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국60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근거나 논리도 없이 '건국60년'을 주장하고, 또 그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였다'거나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을 주요 근거와 논리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 역사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가 언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우리 역사에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가 언제 어

떻게 수용되었는지 하는 점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건국60년’이란 주장은 역사적·법률적은 물론이고, 일반적 상식으로 보아도 성립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두 번이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고, 또 일제로부터 독립한 뒤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1948년에 수립된 것은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 것이었다. 제헌국회속기록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그 사실을 밝혀 놓았고, 1987년 개정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대가 1905년에 설립된 보성전문학교부터, 조선·동아일보가 1920년부터 연원을 따지는 것, 그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고 상식이다.

‘건국60년’은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또 축소·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대한민국 89년의 역사를 60년으로 축소시키며, 1910년에서 1947년까지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1948년 정부 수립 당사자들은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고 있다.

‘건국60년’은 미국에서 ‘건국기념일’ 행사를 한다며,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한데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에는 ‘건국기념일’ 행사가 없다. 미국인들이 기리고 있는 것은 ‘독립기념일’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여 미합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은 우리와 거의 같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1783년 독립하였으며(=1945년 해방), 1787년 헌법을 제정하고(=제헌헌법 제정), 1789년 미합중국을 건국(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미합중국을 건국한 1789년보다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 그 날을 더 중요시한다. 미국인들은 건국 연원을 1776년부터 따진다. 그리고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놓고, 모든 미국인들이 이를 경축하고 있다. ‘건국’보다 ‘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건국60년’은 학계의 논의를 거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일도 없다. 이를 주장하는 주류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며, 여기에 이승만을 ‘건국대통령’ 또는 ‘국부’로 추앙하려는 세력이 합세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와 논리도 없이 ‘건국60년’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축소하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건국60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를 크게 축소·왜곡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국60년’은 1910년에서 1947년까지 한반도에 주인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인이 없는 영토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는 말과 같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관할로 고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일본의 한 지방 단위이지만,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통치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건국60년’이란 주장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축소 왜곡시키는 민족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고, 일본에게 한반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건국60년’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것이라 하겠다. ‘침략’을 부정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징과 영향

박찬표 /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1.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²⁰⁾ 무엇보다 그것은 구한말 이래 민족의 과제였던 주권회복과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의미하지만, 남북 두 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분단시대’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냉전체제로의 편입 및 그 국내화인 반공체제가 형성됨과 동시에, 민주공화정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최초로 제도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이 갖는 이러한 복합적 측면은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낳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독립’이나 ‘건국’이냐를 둘러싼 논쟁, 남한 국가는 ‘미완의 국민국가’ 또는 ‘결손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성’에서 전혀 결손이 없는 근대국가인가를 둘러싼 논쟁, 남한체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냉전반공체제가 가한 모순과 제약을 강조하는 입장과 자유민주주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간의 논쟁,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내생적 기원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외생적 요인을 강조하는가를 둘러싼 논쟁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민주주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48년 체제와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선명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카(E. H. Carr)에 의하면, 현실에 만족할 경우 과거에 대한 재해석은 불필요하다. 반면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지향할 경우,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미래의 방향을 뒷받침해 줄 ‘과거에 대한 건설적 견해’(카 1997,

20) 이 글은 “건국, 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국사편찬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8.7.11)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86)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현대 정치체제의 원형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수립 과정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비판 의식에서 출발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여야 정권교체 등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흔히 우리는 근대의 3가지 과제로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를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과제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는 듯 하다. 오늘 한국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적 입장은 한국이 근대의 세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존재에 기초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논쟁의 영역은 아닌 듯하다.

문제는 이들의 역사해석의 방법론이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보수적 해석에 의하면, 근대의 과제는 순차적·비축적적으로 주어진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게는 냉전과 열전(한국전쟁)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과제가 주어졌고, 박정희에게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민주화는 그 이후 세대의 과제가 된다.

국가형성의 시기는 독립을 이룩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으며, 미소간·남북간·좌우간 대립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유보는 불가피했다고 정당화한다. 또한 산업화 시기에는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고, 이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위해서 저임금과 노동억압, 권위주의 통치 등이 불가피했다거나 양자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주장된다.

특히 이들에 의하면, 국가형성기나 산업화 시기에 자유와 시민권의 제약, 민주주의 부정,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로서 단절적으로 이해된다. 지나간 일로서 현재의 한국 사회나 민주주의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가 각각 분리된 자기 완결적 단계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해석은 단절적·평면적 역사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후 세대는 앞 세대가 남긴 사회적·역사적 조건 위에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앞선 세대가 남긴 유산은 후 세대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의 세 시기는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상당 정도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적적이고 중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최장집 2006, 261).

21) 예컨대, ‘반공의 이름으로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부정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한국전쟁의 결과인 과도한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남한의 이 같은 체제 모순은 1960년대 이후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점차 해소되어 갔다’고 평가된다(교과서 포럼 2008, 158, 160)

그렇다면 이 글의 초점인 국가형성은 민주주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국가형성이란 대외적 주권과 대내적 주권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우리는 전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대외적으로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의 창설을 곧 국가형성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독립이 당면 과제였던 근대사의 경험에 의해, 이로 인해 우리가 지니게 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에 의해 강화되어왔다. 민족이나 국민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그 내부적 측면보다는 대외적 독립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 국가는, 신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등한 인민이 주권의 담지자가 되는 '국민'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형성이란 일정 영토 내의 주민을 단일의 주권(즉 최고 정치권력) 밑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흔히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에서 가정하듯이 동질적 개인이 어떠한 중립적 권위체를 수립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과정에는 지역, 종교, 언어, 인종, 계층, 계급, 이념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 간에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국민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갈등과 균열이 어떻게 정치의 영역으로 대표되어 통합되는가는 이후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립셋과 로칸에 의하면 국민형성 과정은 이를 주도하는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간의 갈등의 과정인데, 그러한 갈등과 균열은 정당을 통해 대표되는 방식으로 정치체제에 통합되었다(Lipset and Rokkan 1967). 그리고 이러한 정당체제의 특징은 정치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어떠한 이해가 실현되는지(그 이면에서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즉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국민국가 형성 과정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지는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은 어떠했는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여러 갈등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국민'으로서 평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어갔는가. 아니면 갈등과 균열은 물리적 폭력에 의해 배제되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초를 놓은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편 정부수립 과정과 그 결과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한다고 할 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첫째는 하나의 가치나 이상의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이다. '실체로서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중요시된다. 이와 달리 두 번째 방식은, 하나의 수단, 절차로서 민주주의를 정의한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전자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한다면 해방 후 경쟁하고 적대했던 여러 노선 중에서 정당한 특정의 노선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해

방3년기의 좌우갈등은 역사해석을 둘러싼 양극적 대립으로 재현될 것이다. 좌파의 혁명적 민주주의 대 우파의 반공보수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최대강령적 민주주의 간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가지 양극적 해석을 모두 지양하고자 한다. 정치적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의 혁명적 민주주의관의 오류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공을 자유민주주의의 전제로 설정하는 보수 우파의 현대사 해석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그것은 해방 이후 정부수립을 둘러싼 적대와 폭력의 역사를 반성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획득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의 상대성을 수용하고, 제도와 절차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룩해가는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절차와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특정의 가치나 이념이 전일적으로 사회에 관철되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이해 간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관점이 해방3년기와 같은 격렬한 갈등의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궁극적 가치'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이 '절차적 민주주의' 속에서 공존하면서 제도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가치나 신념체계에 대한 합의가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민주주의의 생존 기반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즉 그것은 민주주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가치의 차이를 다투는 수단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합의를 만드는 공존과 타협의 기술이 곧 정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주어진 가치나 절차 또는 제도가 아니라, 갈등적 이념과 이해를 갖는 정치집단들이 경쟁과 대립 속에서 불가피하게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도달하게 되는 잠정적 합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규칙들은 사회적 갈등을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존의 테크닉인 것이다(보비오 1992, 3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3년기 국가형성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의 정치세력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문제는 갈등했던 여러 정치세력들이 가치와 이념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했느냐, 아니면 가치나 이념 또는 권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주지하듯이 해방3년기는 후자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갈등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의 결과 특정의 이념과 세력이 패권을 잡고 나머지 세력을 물리적으로 배제·제거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으며, 지배세력은 이를 냉전반공체제로 제도화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초 위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후 전개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해방3년사 또는 48년 체제의 형성과정을 ‘민주주의’의 틀을 통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듯이 해방3년기에 전개된 자주 독립국가 수립을 향한 노력들은 남과 북에 두개의 정부 또는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당시 민중들의 소망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원인이 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두개의 국가로 나뉘어 적대해온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족의 일체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원초적 또는 유기체적 민족주의가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의 역사를 전망하는 하나의 시각과 기준이 될 때, 그것은 민족 내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될 위험이 크다. 예컨대 민족주의 역사관에 따르면, 해방3년기에 우리는 외세의 개입에 맞서 민족 단결을 이루지 못했고, 또한 민족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일전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결국 민족이 단결하지 못했기에 단일 국가형성에 실패했다는 동어반복적 논리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명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단결해야 했다는 도덕적 판단 - 당위성 - 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위론적 언명은, 한국 사회의 강력한 원초적 민족주의로 인해 사회적 울림을 갖게 되었다.

민족주의적 정서는 일체의 내부 갈등을 뛰어넘는 어떤 민족주의적 낭만적 열정을 통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다시 분단이 초래한 남한사회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최대강령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미 신화가 된 김구와 그의 남북협상 시도에서 우리는 그 전형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제2공화국 시기 학생 및 혁신계에서 추진한 통일운동, 87년 민주화 이후 89-90년의 급진적 통일운동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남을 볼

22) 미소분할 점령 하에서 분단은 불가피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남한 체제가 중도좌파 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개방적인 체제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중도좌파 세력은 계급독재 노선을 거부하고 사민주의적 노선을 추구하면서 ‘남한 체제 내 반대세력’의 길을 모색했었고, 중도우파들은 이들과의 공존을 적극 추구하였다. 하지만 좌파는 물론 중간파까지도 남한 체제로부터 배제시킨 우파세력의 극단적 자세와, 체제 내 반대세력으로 남기를 포기하고 남한에서의 무력투쟁을 북한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삼은 극좌파의 기지론적 실천이 양극적 대결을 펼친 결과, 이러한 가능성은 봉쇄되었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의 정치적 결과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볼 때 냉전체제(그 하위 체계로서의 한미안보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급진적 통일운동은,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불임성'을 떨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공국가의 물리력과 권력의 반동화를 불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정치지도자나 집단적 정치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에 있다는 베버의 지적은 경청되어야 할 것이다(베버 2007).

다른 한편 민족주의적 정서의 동원이나 이슈의 활용은 민족 내부의 갈등이나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동원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쉽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차이나 갈등은, 정치적 동원과 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균열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상충(trade-off) 관계에 놓이기 쉽다. 즉 특정의 사회적 이슈나 갈등을 동원하는 것은 다른 이슈나 갈등을 탈동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좌파세력이 민족주의 이슈를 선차적인 것으로 수용한 결과, 결국 계급균열 또는 좌우균열이 정치대표체제 내에서 대표되는 데 실패한 아일랜드 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 정서의 양면성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세력과 집단 간의 이해와 이념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단일의 정치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억압과 배제의 논리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는 논리는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와 적대의 태도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배제의 논리는 경쟁하거나 적대하는 내부집단을 외부 집단과 연계시키거나 외부집단으로 뭉으로써 제거하는 논리로 전환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탁치파동은 자신의 경쟁세력을 외세의 괴뢰로 몰아붙여 공격하는 민족주의에 내재된 '배타적 공격성'을 보여준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탁치파동이 보여주듯이, 결국 해방3년기에 민족주의는 민족 내의 단결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민족 내부의 갈등적 집단간의 갈등과 적대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수행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분단극복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분석의 시각과 판단의 근거를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이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를 때, 민족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른 민족 내의 갈등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의 다양한 갈등과 이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를 때 해방3년기에 우리가 단일의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 원인의 하나는, 만일 미소의 분할점령을 극복하고 단일 국가를 이룰 공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천에 실패했기 때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민족문제의 극복도 '유기체적 민족주의'를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민족이라는 동질성의 강조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다양한 갈등적 이해와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과 공존하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2. 1948년 체제의 특징과 그 영향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48년 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48년 수립된 신생정부 또는 신생국가가 추구한 정치질서나 정치이념은 무엇인가. 최근 이는 ‘건국이념’ 또는 ‘건국정신’ 등으로 표현되면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그 첫째는 보수적 해석이다. 이들에 의하면 정부수립은 구한말 개화파의 계보를 잇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수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건국의 기초 이념을 충실히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교과서 포럼 2008, 143, 148-9).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한국 국가형성의 특수성 및 그 결과인 냉전반공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가한 제약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공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는 냉전적 역사인식으로 회귀할 위험을 안고 있다.

보수적 역사 해석과 대비되는 또 다른 해석은, 건국이념을 제헌헌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서 찾는 것이다. 즉 건국과정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근대적 ‘헌정혁명’의 결과이며, 제헌헌법에서 나타난 건국이념은 사민주의적 노선 또는 제3의 길이었다는 것이다. 제헌헌법의 내용을 서구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준해서 살펴본다면, 한국은 최초의 민주주의 제도화 시점에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물론 사회적 권리까지 광범위하게 헌법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라는 사민주의적 내용까지 포함되었으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벗어난 사회주의적·통제경제적 요소를 상당부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 조문에 담긴 건국이념은, 정부수립 당시의 정치적 힘의 관계 내지 건국 주도 세력의 성격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성립된 신생 대한민국의 틀을 그려보면, 자유주의·자본주의 질서와 사회주의 질서의 타협 내지는 제3의 길을 지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제 건국의 정치과정은, 좌우의 갈등하는 정치세력간의 타협이나 제3의 노선이 실현된 과정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전후 자본주의 질서에 남한이 전일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보수우파인 한민당·이승만 동맹이었다. 좌파인 공산당은 물론이고 사민주의 노선을 추구한 중도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과의 타협·공존을 추구한 중간우파 등은 모두 배제되거나 5.10선거 참여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민족주의 우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구의 한독당마저 정부수립에 불참하였다.

이와 같이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제헌헌법의 내용과 건국의 실제 정치과정 및 건국 주도세력의 성격 중에서 현실을 규정한 것은 역시 후자였다. 신생 대한민국이 지향한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은 조문화된 헌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권력의 성격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해석 역시 냉전반공체제가 남한 민주주의에 가한 제약을 충분히 답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헌헌법의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적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다. 하지만 후자는 그것을 담보할 사회정치세력이 모두 제거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의미를 지닐 수 없었고, 이후 대부분 폐기되거나 사문화되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신생국가의 정당화 이념'이라는 기능이 부여되고 있었다. 즉 남한의 분단 반공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야 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이념으로서 부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반공체제라는 한계 내에서 수용되고 작동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분단국가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을 담은 것은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최장집 2005, 77)이었다. 48년 체제의 특징을 헌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두 가지 법전에서 찾는다면, 실질적 측면에서 정체의 본질을 규정한 것은 후자였다. 한국의 48년 체제의 특징은 '반공체제 내에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반공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라는 두 계기 중에서 '반공체제'의 성립은 미소 분할점령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압도적 규정력을 발휘한 결과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한말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온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민족 내부의 다양한 모색을 폐색시키는 것이었다. 국권 상실 이후 191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지향점은 대체로 민주공화정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1920년대 사회주의 이념의 도입 이후 '어떤 공화국민가를 둘러싸고 좌에서 우에 이르는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단일 노선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등 여러 노선이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모색되었다. 해방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개인적 자유나 시장경제보다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냉전 체제로의 강제적 편입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여러 지향 간의 타협에 의해 또는 이들이 정치공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국민국가 건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²³⁾ 냉전체제로의 편입은 이러한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반공국가라고 하는 신생국가의 이념과 지향점을 외부로부터 부과하게 되었다.

23) 이러한 가능성의 흔적을 우리는 건국헌법의 사민주의적통제경제적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생 국가는 냉전체제에 편입되었지만, 냉전 반공이념이 내면화되고 헤게모니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전을 기다려야만 했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사회주의적·사민주의적 지향이 강하였고, 제헌국회의 소장파 뿐 아니라 우파 의원 역시 민족 내부에서 전개되어 왔던 국민국가 건설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건국 헌법에서 광범위한 사민주의적·통제경제적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냉전 반공국가 및 자본주의 체제와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후 아무런 저항 없이 수정 또는 삭제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그 조항들은 신생 국가가 추구할 목표라기보다는, 그 때까지 전개되어온 국민국가 건설론의 마지막 흔적, 즉 화석화된 과거의 흔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외부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작용한 건국과정과 민족 내부에서 전개되어온 건국의 지향점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해방 당시 한국사회는 우에서 좌에 이르는 폭 넓은 이념적 지평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공체제는 남한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반공’이라는 협소한 틀 안으로 구겨 넣고자 했다. 그 과정은, 단지 특정 이념을 배제하는 추상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기본권, 인간적 존엄은 물론 생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폭압적 과정이었다. 또한 반공 체제 형성이란 ‘역사에 뿌리를 둔 국민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된 국민적 정체성’을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한 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민주적 태도를 배양할 토대를 근저에서 허무는 것이었다(박찬표 2007, 426-7).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반공체제의 동전의 양면으로 제도화된 것이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반공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가한 구조적 제약과 왜곡을 사상시켜 버리고 마치 양자를 정합적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즉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체제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로 연결된 치명적 위험을 안게 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을 구한말 이래 우파의 내생적 수용의 결과로 해석하는 역사인식 역시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범을 48년 시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이식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오류일 수 있다. 구한말 이래 우파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수용이 있었고, 임시정부 역시 1919년 임시헌법에서 이미 민주공화정을 국체로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세력이 민주주의 틀 내에서 경쟁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면서 사회주의나 좌파의 이념과 세력을 전면 배제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수용의 결과로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냉전의 국내화인 반공체제의 성립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반공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생적 수용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것은, 냉전반공체제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사회공동체에 가한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마치 하나의 에피소드인양 치부하거나 또는 잊혀지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해방 정국에서 우파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다고 할 때, 그것은 ‘지배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그들이 추구한 것은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국가’ 곧 자본주의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 절차와 제도를 의미하는 ‘정부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건국 세력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우파세력들은 장차 자신들이 장악할 반공국가의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각종

자유주의적 개혁을 저지하고 반공체제에 어울리는 권위주의 질서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우파의 의도를 누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촉진한 것은 미국과 유엔한위 등이었다. 만일 냉전과 분단, 미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이 반공체제 수립이라는 단계에만 머물렀다면,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의 수준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반공체제의 수립에 외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듯이, 자유민주주의 제도화 역시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반공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가한 제약은 다알의 논의를 빌려 설명될 수 있다. 다알은 <표 1>에서 보듯이 선거권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부여되느냐(참여의 포괄성), 정당결성과 조직적 반대의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느냐(정치경쟁의 자유화)라는 두 차원을 기준으로 정치체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를 때, 48년 체제는 보통선거권은 부여되지만 정치경쟁은 제한되는 ‘포섭적 패권체제’에 해당한다. 정부수립에 광범위한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보통평등선거권이 조기에 부여되었지만, 대중참여로 인한 선거경쟁의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정당 경쟁의 공간은 이념적으로 극도로 폐쇄되었던 것이다.

<표 1> 다알의 정치체제 유형

정치 경쟁 의 자유 화	고	경쟁적 과두체제 (competitive oligarchy)	대중 민주주의 (mass democracy)
	저	폐쇄적 패권체제 (closed hegemony)	포섭적 패권체제 (inclusive hegemony)
		저	고
		참여의 포괄성	

출처: Dahl 1971

다알의 논의에 따를 때, 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일단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통평등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함께 정치경쟁의 자유를 확대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987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적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에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된 보통평등선거권은 87년 민주화를 통해 비로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²⁴⁾ 이에 따라 우리는 87년 ‘민주돌파’(democratic

24) 48년 체제의 내용 중에서 보통평등선거권의 효과와 상승작용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한 또 다른 요소는, 이념적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복수정당 간 경쟁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와 대비하여, 실질적 평등의 근본적 성취라는 이상을 내걸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를 결여한 결과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한계 역시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breakthrough)를 이룩했다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돌파에 불과하였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의 돌파'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87년까지 보통선거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제1 단계 민주화 운동이라 한다면, 87년 이후 노동 및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시도는 대안의 돌파를 위한 제2단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보통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민주화 운동과 87년 이후 대안의 돌파를 위한 2단계 민주화 운동은 그 이념이나 주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가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시민권 실현을 위한 운동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을 확보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 노동계급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다른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구 역사를 볼 때, 그러한 요구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이루어진 노동 및 사회하층의 정치세력화,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정당 또는 좌파정당의 원내 진입 및 집권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좌-우' 또는 '자본-노동' 균열에 따른 정당체제의 형성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자본-노동 균열'의 객관적 조건은 산업화를 통해 노동 계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됨으로써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가 정치적 균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즉 노동이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정체감의 형성과 정당을 통한 조직적 표출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Mair 2006a, 373).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을 실현할 주체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형성과 산업화 과정이 남긴 역사적 구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가형성과정에서 등장한 냉전반공체제는 해방 직후 폭발적으로 팽창했던 시민사회를 폭압적으로 탈동원화시키는 다른 한편으로, 반공이라는 새로운 국가이념을 부과하였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60만으로 성장한 군대는 반공국가의 강력한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는 국가형성 과정이 남긴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반공국가의 물리력과 헤게모니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권위주의 발전국가는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예컨대 70년대 유신 하 총력안보체제에서 노조 활동은 국가보위의 차원에서 통제되었다. 노동의 조직화 시도는 반공체제의 물리력과 반공이데올로기가 총동원되는 가운데 '외부와 연계된 체제 전복행위'로 규정되어 탄압되었다. 이처럼 노동계급 형성을 억압해온 체제 하에서, 노동자 집단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도록 강요되었다. 결국 산업화과정은, 그 이전에 형성된

48년 체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부과한 또 하나의 결정적 국면이 되었다.

87년 민주돌파는 이러한 역사적 제약 조건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더욱이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의 자율적 조직화와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체제는 그대로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장벽이 마지막으로 해체된 것은 민주화 이후 10년이 지난 96-97년의 노동법 개정에서였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90년대 들어 시작된 노동 내부의 분화가 비정규직 도입 등에 의해 급격히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노동세력이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기에는 극히 불리한 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열린 정치경쟁의 공간은 기존의 보수 우파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흔히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지역정당체제는, 정치경쟁의 공간을 폐쇄시킨 역사적 구조적 조건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형성기와 산업화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냉전반공체제와 노동배제의 정치구조가 낳은, 사회의 기능적 계층적 균열의 표출이 봉쇄된 구조 하에서 정치경쟁의 공간만 열린 민주화의 특징이 지역정당체제를 가져온 것이다(박상훈 2006).

한국의 민주화가 2단계 민주화 즉 대안의 돌파에 실패한 결과는 시민사회와 정치대표체제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제약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의 진전은 '누가 투표하는가'에서 '어디에 투표하는가'로 나아가는데(보비오 1992, 122), 이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3. 결론 : 어떤 민주주의인가

앞에서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갈등의 제도화'라는 방식으로 국민국가 내로 통합되는가, 아니면 물리적 폭력에 의해 배제되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초에 관한 핵심적 질문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은 후자의 한 극단을 보여준다. 정치경쟁의 공간을 이념적으로 폐쇄시킨 반공체제는, 이후 대안적 이념과 세력에 기초한 정치적 대안의 형성을 억압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을 확보하는 현재의 과제와 관련하여 구조적 제약 요인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역설적으로 보수우파적 역사해석에 의해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의 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건국과정은 '공산주의·계급독재'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두 노선의 대결이었는데, 건국 60년의 역사는 후자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의 한국은 '세

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교과서 포럼 2008, 148).

이러한 보수적 역사해석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이들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비교의 기준을 북한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 두고 있다. 보수적 역사해석은 북한 또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대결사관’, ‘승리사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탈냉전의 냉전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탈냉전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공산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와 대결해왔다는 점에서 탈냉전은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 내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가 자본주의 체제의 완전성이나 완결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부의 적에 대비하여 내부 체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역사해석은 하나의 ‘체제 이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식론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현대사 해석에 있어 결국 남한 반공체제 형성과정에서 야기된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연결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들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했던 만큼,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신생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동질적 국민의식을 배양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교과서 포럼 2008, 158). 이는 결국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반공이라는 이념적 기초 위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무수한 폭력과 억압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발전은, 이들의 주장처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론을 적대하고 배제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제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수용하고 사회주의 세력을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체제 내 경쟁세력으로 포섭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라는 외부적 잣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내부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하나의 단일 모델이 아니다. 자유주의 내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정의와 모델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북구의 사민주의 체제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까지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포괄된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유주의와 어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이룩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원리에 기초하는데, 이를 놓은 것은 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48년 제도화된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이러한 자유주의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구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서구열강의 독립부강자주의 원동력으로서 즉, 부국의 방안(김석근 2005)이자 체제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해방 이후 역시 좌우대결 속에서 자유주의는 반공국가

와 반공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즉, 국가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자유주의가 정당화 이념으로 강조되었지만 그것은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로서,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자유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아블라스터 2007, 18장). 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는, 반공국가의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 하는 체제 논리로 쉽게 전락하게 된다.²⁵⁾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진보적’으로 기능했던 시기는 70-80년대 유신체제와 5공 시기였다. 시민권과 정치적 참정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했던 이 기간 동안 자유주의는 인권과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보수야당과 중산층의 이념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민주화 운동을 추동한 주된 이념은 아니었다. 민주화를 추동한 것은 80년대의 NLPD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적·급진적 이념이었다. 이질적 두 힘 간의 민주화동맹은 87년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곧 붕괴되었다. 노동의 세력화와 이념적 갈등의 분출에 따라 자유주의는 급격히 보수화되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개혁이나 분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자유주의는 분배와 개혁요구를 ‘반자유주의’로 공격하는,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을 방어하는 논리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주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과 질서’를 요구함으로써 다시금 강력한 국가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냉전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유주의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의 기본적 문제의식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을 국가로부터 지키는, ‘소극적 자유’를 확보하는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나아가 적극적 자유, 복지자유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등으로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노력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성격을 확보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제 역시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인권 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었다. 이는 소극적인 민주주의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적극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사에 반하는 권력을 징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민주주의관에 따르면, 국가는 전체 인민의 의사 즉 일반의지의 실현이 되며,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비전

25) 벌린(I. Berlin)은 자유의 주체는 개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워야 할 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로 보는 혼동이 첨가된 결과, 소수 권력자 또는 독재자의 권위에 굴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마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벌린 2006, 401). 이 지적은 당초 공산주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분단의 쌍생아로 나타난, 반공체제와 결합한 남한 자유주의의 한계와 특징을 지적한 언명으로도 읽혀진다.

제적인 공동의 힘을 제도화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해줌으로써 고립을 극복하고 연대로 이끌게 된다(보비오 1992, 53-54). 달리 표현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의 집합적 결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현까지를 이끄는 효과를 내장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주의의 자기 확대(적극적 자유 개념의 수용)나 사회주의 이념 등을 매개로 하여 노동계급 또는 임금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을 동원하는 노동 정당 또는 좌파정당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형성이 역사적으로 봉쇄당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권위주의 발전국가가 남긴 기존의 사회경제질서를 합리화해주는 '보수적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민주화가 결국 '사회주의정당 또는 좌파정당 없는 민주주의'나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해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적 이해는, 그것이 정치 대표체제 내로 폭 넓게 대표되는 것에 비례하여 평화적 공존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할 때 하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하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배제되고 소외될 경우, 그것이 초래하는 갈등은 공동체의 붕괴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이 노동자나 임금근로자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저 계층일 경우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허약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아직 평등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동원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다.²⁶⁾ 시장의 무한경쟁과 노동의 상품화가 극도로 전개되는 현재 상황에 맞서, 어떻게 대안적 가치에 바탕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고 유의미한 정치적 대안세력과 정당을 구축할 것인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적 내용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상이한 이해와 가치 간의 갈등과 타협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충돌하는 이해와 이념의 공존을 전제로 하며, 갈등의 제도화에 관한 절차적 합의에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48년 남한 국가 형성과정을 특정 가치와 이념의 승리의 역사로 자축하거나, 아니면 민족 내부의 가치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의 역사로 기록하고 민족주의를 통한 그 지양을 추구하는 역사인식으로는, 한 사회공동체 내의 이익이념갈등을 수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해방3년기의 역사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48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48년 체제가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상황의 산물임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48년 체제의 특수성을 낳은 외적 조건 즉 냉전체제는 이미 해체되었으며, 그것을 지탱시켜온 남북의 극단적 적대 역시 해체되고 있다. 이제 48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전망과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26) 단적으로 국민총생산의 50%를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그 중 50-60% 정도를 복지에 지출하는 유럽과 비교할 때, 국민총생산의 25% 정도에 불과한 국가예산의 25% 정도만이 복지관련 항목에 지출되는 한국의 현실은,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과서포럼. 2008. 『한국 근현대사』. 기파랑.
- 김삼수. 2003. “박정희 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 김석근 2005. “‘갯’을 벗지 못한 조선의 리버럴”, 『NEXT』 2005. 7.
-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 립셋 S. M. 2006. 『미국 예외주의』. 문지영 강정인 하상복 이지윤 옮김. 후마니타스.
- 박명립 2003.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 박상훈 2006. “한국의 87년 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연구』 49권 2호
-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벌린, I. 2006. 『자유론』. 아카넷.
- 베버, M. 2007. 『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옮김. 나남출판.
- 보비오, N. 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황주홍 옮김. 문학과 지성사.
-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II』. 확인요
- 아블라스터, A.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조기제 옮김. 나남.
- 이영록 2006. 『우리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 정태영. 2007. 『한국사민주의 정당의 사회적 기원』.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6.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 : 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 카. E.H. 1997.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 까치글방.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 후마니타스.
- Bartolini, Stefano. 2000. The Mobilization of the European Left, 1860-1980. The Class Cleav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R.A. 1971. Polyarchy :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 Yale Univ. Press.
- Lipset, S. M. & S.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 An Introduction", S. M. Lipset and S. Rokkan eds., Party System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 The Free Press.
- Mair, Peter. 2006. "Cleavages". Katz and Crotty. ed. Handbook of Party Poli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ttschneider, E.E. 1975.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Hinsdale: The Dryden Press.

「대한민국헌법」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주체와 기원을 중심으로²⁷⁾

서희경 / 진실화해위원회 팀장

I. 문제제기: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립되었는가?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²⁸⁾에 채택된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기원과 주체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공화제’가 단지 미군정에 의해 주어진 명목적인 것이거나 특정 정치가의 권력의지 또는 소수 법률가의 헌법이론에 의해 구성된 임의적 산물이 아니라, 19세기말 이래 한국인들의 역사적 실천과 정치적 숙고에 의해 탄생된 결과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의 ‘민주공화제’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이미 성립된 것임을 역사 사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제)을 ‘선언’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이다. 요컨대, ‘민주공화’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948년 정부수립 시기가 아니라,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27) 이 글은 한국 헌법에 관한 필자의 연구를 본 토론회의 취지에 따라 재구성하고, 약간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서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대목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서희경. 2006.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91): 만민공동회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5호; 서희경·박명림. 2007.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서희경. 2007. “시민사회의 헌법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해방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28) 이 글에서 소개하는 헌법(안)들은 모두 명칭을 갖고 있다. 근래에는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을 「건국헌법」이라 칭하였으나 최근 ‘건국’ 시기 및 주체 등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일단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견해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대한제국의 소멸과 미군정의 수립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의 민주공화제 이념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인식이다.

「공화국」은 우리 사회의 식민화와 동시에 소멸된 그 「대한제국」에 대한 당연한 역사적 부정이며, 또한 정치적 기본질서에 있어서의 그 자유민주주의는 미군의 진주에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그 논의의 대상은 대체로 권력구조, 경제질서, 그리고 常意的 의미의 기본권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공화국, 국민주권, 정치적 기본질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그것은 이러한 사항 등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그 스스로가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었다(한태연 1988, 41).

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한국의 헌정은 한국인의 정치적 실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해방 후 한국의 헌법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단순히 대한제국의 부정으로서의 ‘공화국’, 그리고 미국 점령 하에서의 자동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수립이라는 아주 당연하고 자명한 역사적 귀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19세기말 이후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의 민주공화제는 자연적이고 수동적인 선물은 아니었다. 만민공동회를 출발점으로 민주공화제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논쟁과 실천이 존재했으며, 해방공간에서도 이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나아가 공화국의 성격을 둘러싸고 「대한민국헌법」을 수궁할 수 없었던 정치세력은 내전으로 나아갔다. 여순 사건이나 한국전쟁은 그 결과였다.

그런데 해방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제시한 모든 헌법 초안에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주공화국,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 원리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 핵심원리가 “자명한 것으로 전제”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한국 헌법혁명의 역사적 진화로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박명림 2003, 115).²⁹⁾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1948년 헌법의 핵심원리들이 19세기 이래의 한국 역사를 통해 광범위한 합의를 거쳤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소수의 권력자와 권력집단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이 너무 과도하게 인식되었다. 그 결과 헌법 제정이 장기간에 걸친 한국인의 ‘집단 의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정과 관련된 기

29) 1948년 헌법이 “근대헌정체제를 등장시키기 위한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헌법혁명의 귀결의 의미를 갖는다”는 연구는 박명림(2003, 115-116)을 참조할 것.

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분단국가의 수립과 우파 중심의 정부 구성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 결과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헌국회 구성 이전의 각종 헌법구상과는 무관하게 ‘졸속’으로 단기간에, 그리고 ‘이승만과 소수의 제헌의원, 그리고 특정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돌출적으로 제정되었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정 이후 1948년 「대한민국헌법」 탄생 사이에는 수차례의 개헌 및 다양한 세력의 헌법기초 활동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수 집단의 헌법구상이 「대한민국헌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기존연구는 일반적으로 ‘민주공화제’가 1948년에 수립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를 계승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민주공화제’를 1948년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다. 그렇다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를 계승한 것일까?

한태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의 식민화와 동시에 소멸된 그 「대한제국」에 대한 당연한 역사적 부정”이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역사적 부정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소멸과 대한민국의 건국 사이에는 36년의 역사가 비어있다. 한태연은 그 시기를 ‘식민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 한국인의 정치행위는 식민화된 수동적 존재로서의 행위만 존재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1948년의 ‘민주공화제’는 한국인의 어떠한 정치적 실천과도 무관한 돌출적인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정치운동에 의해 이미 수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는 이를 계승하여 재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개최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 해를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였다.³⁰⁾ 그리고 4월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가결하였는데, 그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³¹⁾ 4월 14일 임시정부 수립식에서, 이동녕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지금부터 이 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자들은 3.1운동이 일본제국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정치운동이자, 대한제국에 반대하는 반군주제 정

30) 白尙健 『國會前史』 p. 25. (필사본, 국회도서관 소장)

31) 白尙健 『國會前史』 p. 27. 임시의정원 헌법초안자들은 미국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上海總領事 有吉明가 입수하여 4월 12일자 외무대신 內田康哉에게 기밀 보고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초안 제1조는 “조선민주공화국은 북미합중국의 정부를 본받아 민주정부를 채용함”으로 되어있다. (“臨時政府의 憲法草案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1)」 제170호 5606(暗).

치운동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87년 헌법 전문은 1948년 재건된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표명한 대내적 민주주의와 대외적 민족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수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를 계승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대외적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 문제를 판단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³²⁾ 일본은 공식적으로 1910년의 한일합방이 합법적이고, 따라서 식민지배가 정당했기 때문에 1910-1948년 사이에 한국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제국 또는 일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자신의 일부였던 조선의 분리를 승인함으로써 탄생된 신생국이다.

이상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의해, 본고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다수 한국인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완성된 것이며, 그 기원을 1919년 3.1운동에 두고자 한다.

II.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기원

1.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기원

1) 만민공동회(1898): 한국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의 기원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한국인의 정치생활에 초래한 최대의 변혁은 인민이 유일한 주권자이며, 공동체의 정치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인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주권재민의 원리와 공화제에 대한 강한 관심은 1880년대의 「漢城旬報」와 「漢城週報」에서도 풍부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32)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한국민을 유일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과 전쟁을 수행한 국가라고 보는 데는 세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 첫째, 상해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상해임시정부는 식민지기의 유일무이한 정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48년 헌법 전문에 구체적인 정부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까닭 때문이었다. 셋째, 임시정부의 자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일본제국을 축출할 수 없었다. 최종적인 해방은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민을 대표하여 일본제국과 유효한 전쟁을 수행한 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어, 한국인의 정치적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만민공동회에서였다.



종로에 운집한 군중(1897). 근대사진연구가 정성길 소장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1898년의 만민공동회는 민회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이었다. 즉, 전통적인 '집단상소'나 '민란'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만민공동회가 공화주의적 맹아를 보여주는 것은 이 민회(people's assembly)가 자치(self-rule)에 대한 인민의 자각에 기반하여 동료 인민들과 공동생활의 문제들을 협의하고 함께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Michael Sandel 1996, 5-6). 만민공동회는 인민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의 기원이라는 평가할 수 있다. 만민공동회는 법을 통해 자의적이고 전제적 정부를 제한하려고 했던 독립신문의 계몽적 수준을 뛰어넘어, '참여'를 통해 정치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예컨대, 1898년 10월 29일 관민공동회에서는 정부 대신들과 독립협회 회원 및 서울의 인민들이 함께 모여 「헌의6조」를 의결하였고, 10월 31일 고종은 「조칙5조」를 발표함으로써 그 내용을 수용했다. 다음은 관민공동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헌의6조(獻議六條)

1. 외국인에게 依附하지 아니하고 동심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견고케 할 사.
2. 광산·철도·매탄(석탄)·산림 및 차관·차병과 모든 정부와 외국인과의 條約의 일을 만일 외부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하지 못할 사.
3. 전국 재정은 어떠한 稅를 물론하고 모두 度支部에서 句管하되 다른 府部와 私

會社는 간섭할 수 없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표할 사. (...)

6. 章程을 실천할 사 (독립신문 제178호, 1898/11/01).



1898년 개최된 관민공동회로 추정되는 사진.
근대사진연구가 정성길 소장

「헌의6조」는 형식상 전제황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제황권’을 제한하여 공공화시키려는 것이다.(유영렬 1985; 신용하 1986; 서영희 1995). 즉, 왕의 자의가 아닌, ‘장정’ 곧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민과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해야 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헌의6조」의 군민공치(君民共治)는 입헌군주제의 다른 아니었다. 공화제는 일반적으로 군주정치의 대립적인 의미의 정치체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왕과 인민이 함께 협의하여 정치를 행한다’는 의미의 군민공치(君民共治)적 군주정치는 사실상 ‘공화주의의 싹’이었던 것이다(정용화 2004, 274-288; 정용화 2005. 44)³³⁾

2) 황제퇴위사건 전후의 정체 인식: 군주와 국가의 분리·입헌정체·대의제도 모색

19세기 후반 이후 군주주권을 기초로 한 왕정은 민의 안녕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더 이상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노정했다. 이 때문에 1882년 「한성순보」 이래 민을 정치적 주체로 확립하려는 민주공화주의의 이상이 싹텄고, 1894년의 동학혁명과 1898년 만민공동회를 통해 역사적으로 운동화 되었다. 그러나 1899년의 「대한국국제」 반포는 이러한 시대적 호

33) 1898년 11월 26일 인민의 의사는 결국 현실화되어, 고종 황제는 200인의 민대표와 직접 접견했으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국태민안 칙어’를 내려 실행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한규설의 말대로, “관리와 백성들이 협의”했던 이 사건은 “나라를 세운지 5백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정교 2004, 248-249). 김홍우는 이를 “조선조 역사상 최초로 군민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였다(김홍우 2004, 57).

름에 반하는 것이었다.³⁴⁾ 이로 인해 막 탄생한 민권 의식과 에너지는 사라져버렸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군주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³⁵⁾ 현재의 연구 결과를 잠정적으로 요약하면, 1907년 고종 황제퇴위 사건은 한국인의 헌정에 대한 사고와 정체 인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헌의6조」의 군민공치(입헌군주제)에 대한 지향은 거의 사라졌다. 황제퇴위사건으로 황제권이 상실되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켰던 황제의 권력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³⁶⁾

더욱이 한말 이래 성장한 공화에 대한 인식 즉,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각성, 이를 공공화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인민의 참여 폭발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³⁷⁾ 그 표출 방식은 초기에는 공화제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군주를 배제한 정치를 상정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헌정연구회 및 대한협회의 공화제적 정체구상을 검토해보자.

1905년 5월 이준(李儔)·양한묵(梁漢默)·윤효정(尹孝定) 등이 조직한 헌정연구회³⁸⁾는 「憲政要意」(1905. 7)에서 ‘입헌정체론’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글은 “국가는 국민의 공동체이지 군주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국가와 군주, 정부, 국민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³⁹⁾

34)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국제」는 「헌의6조」의 입헌군주제 지향을 파기하고, 그 반대의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군주권의 내용을 근대적인 언어로 공식화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그 기본원칙은 “군권의 침손”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었다. 요컨대 「대한국국제」는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반전을 의미했다.

35)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애국계몽운동기 또는 자강운동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계몽에 의한 국권 수호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정치체제에 의해 국권을 회복하고, 어떤 체제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국권수호에 필적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1980), 박찬승(1992), 유영렬(1997) 참조.

36) 1898년 공화제는 너무나 위험했다. 예컨대, 독립협회의 소장 지도부(공화파)가 박영효의 정부 기용을 제기하자, 1898년 3월 백묵전 다락 최초의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했던 이승만은 다음해 1월 쿠데타 모의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헌정연구회(1905), 대한자강회(1906), 대한협회(1907), 서북학회(1908) 등의 공화제 지향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37) 당시의 폭발적인 규모의 사회단체 조직 형성과 활동은 이 시기까지의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며, 이른바 이 현상은 “사회의 탄생”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독립협회운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많은 정치적 논의들이 등장하여 “자유민권론과 국민국가건설론, 공화정체론과 입헌대의제론, 그리고 지방자치론 등을 체계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켜, 한국사회에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정리케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유영렬, 1997, 311).

38) 헌정연구회는 을사조약 직전에 활동한 대표적인 정치단체로, 주로 독립협회 관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헌정연구회는 1906년 2월 통감부에 의해 해체된 후, 대한자강회로 개편되었다.

39) 玄采(1907) 『幼年心讀釋義』 제2권, 31-43; 정승교(2004, 65)의 내용 정리 인용. 이상의 내용은 김우식의 『國民

이 글은 첫째, 국가와 황실의 분별을 주장한다.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이지만 국가를 사유할 수 없으며, 황실의 흥망이 곧 국가의 흥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국가와 군주는 구별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편으로 군주의 명령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군주는 정부 대신을 임명할 뿐 그의 직권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셋째, 군주가 국가를 대표하므로 대외적인 주권은 군주가 갖지만, 이 경우도 주권은 군주 1인이 아니라 군주와 의원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논한다. 여기서 국민의 권리는 하늘에서 준 것이며 사람이 사람되는 본분이니, 이것을 잃으면 사람됨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憲政要意』는 군주제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도 국가나 정부를 사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사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입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 영국의 경험과 정치적 지혜의 산물이다. 즉, 군주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군주의 자의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운영을 군주의 의지(will)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지혜인 법(law)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정요의』는 군주와 국가, 군주와 정부를 구분하고, 국민의 권리를 초정치적인 천부인권의 원리에 의해 옹호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란 군주 일인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라는 공화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근접하고 있었다. 헌정연구회는 군주와 군주주권을 현실로서 인정하지만, 천부인권론에 근거하여 군주권을 제한하려고 하였다.⁴⁰⁾

또한 1907년 황제퇴위사건이후 발표된 대한협회⁴¹⁾ 김성희의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은 『헌정요의』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⁴²⁾ 『헌정요의』에서 천명한 국가정부와 군주의 분리 원칙, 즉 ‘입헌’은 여기에서 대의기관이나 정당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제도로 진전되고 있다.

요컨대 고종황제퇴위사건으로 인한 군주권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환경은 오히려 ‘민주공화’와 ‘입헌정치’라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 내용은 정치는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를 공공화

須知』(1905)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또한 『황성신문』이나 『대한자강회월보』(제3호 1906/09/25) 등 당시의 여러 신문 잡지에도 게재되었다.

40) 천부인권의 권리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것은 1884년 『한성순보』 제14호의 『美國地略續稿』이며, 갑신정변의 정령 제2조 「閉止門閤 以制人民平等之權 以擇官 勿以官擇人事」에서 문벌폐지와 인민의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1888년 박영효의 상소, 『朝鮮內政改革에 관한 建白書』,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서도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1906년 薛泰熙는 「法律上 人의 權義」(대한자강회월보 제8호)에서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권리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김효전(2000, 317-325)을 참조.

41) 대한협회는 1907년 11월 일제 통감부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계열과 김가진 등 전직 고위관료, 그리고 천도교 지도부가 결성한 단체이다.

42) 김성희. 1908.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 『대한협회회보』 제1호.

하기 위한 입헌의 지향,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의정치제도의 모색과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곧 일본의 보호국 질서에 적응하려는 민권운동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3.1 운동 이전의 민주공화제 선언: 「합병조약폐기」와 「대동단결선언」의 인식

다음은 1910년 한일합방이 민주공화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에게 주권을 양도한 황제권에 대한 인식이 그 핵심내용이다. 1907년 황제퇴위사건 이후에는 고종에 대한 동정론이 강했다. 「대한매일신보」의 “전국사람이 분격하여 선비들은 피를 토하고 저자 백성은 전문을 달았다”는 대목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대한매일신보 47호, 1907/07/23) 그러나 한일합방의 경우는 달랐다. 그 이유는 합병 내용에 있다. 한일합병 조약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韓日合併條約文

(...) 第1條 韓國 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且 永久히 日本國 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3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韓國 皇帝陛下 皇太子殿下 ?其 后妃 及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 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4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前條 以外の 韓國皇族 及 其 後裔에 對하여 各 相當한 名譽 及 待遇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維持 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純宗皇帝의 韓日合併에 關한 詔勅 勅諭 및 合併條約文이 공포되다」 『每日申報』 (1910-08-29)]

위의 한일합병조약문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담고 있다. 첫째,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장악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일본에 의한 한국황제권 폐기인 동시에 이민족에 의한 전제정치 선포문이다. 둘째,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일체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하지만, 특히 일부 보호·보상 대상자를 규정하였다. 즉, 황제와 훈공 한인, 시정(施政) 한인, 그리고 신제도를 수용하는 한인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며, 이들에게만 관리등용과 금전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합병조약문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김규식은 ‘합병조약폐기’ 주장에서 일본에게 주권을 양도한 황제권을 국가와 민족, 백성과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협회 민권론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내용이었다. 김규식은 거기에서 나아가 국제공법을 수용하였다.

合併條約廢棄

○○. 大韓民族은 一九一零年八月○○○日에 締結된 合併條約을 永○○○○기키를○
○는 폐기 理由는 ○○○○○○○○○○○○○○하니 ○

甲、合併條約은 詐欺와 暴力으로 締結된인 故로 비록 韓國皇帝가 一千五百餘萬의 人
民과 四千一百年の 獨立的主權을 有한 國家를 日本皇帝에게 讓渡할 權利가 有하다 하
더라도 此는 國際公法을 勿施하며 此에 違反되는 行爲을 犯함이니라.

乙、大韓民族及國家는 韓皇의 此와 如한 合併條約(締)結權을 否認하며, 獸類가 아닌
吾人은 吾人의 承諾如何의 尊重함을 知하는 同時에 此에 對하여 承諾을 與치 안은 지
라.

丙、合併條約은 日本政府와 韓國間의 條約, 及其他列強間의 條約中에 있는 主權과 領
土의 保全을 侵하여 國際公法을 直接犯하니라. …[「名. 通信機關은斷絶되다」 대한민
국임시정부편, 「독립신문」 (1919-08-21)]

이상에서 김규식은 합병조약과 관련하여 황제의 조약체결권을 부정하였다. 이는 황제가 대외
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가 아님을 주장
한 것이다. 나아가서 황제의 합병조약체결은 국제공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국제
공법을 군주권 위에다 두었다.

한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변화된 정체 인식은 「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보다 명확해졌다.
1917년 7월, 신한혁명당 출신의 신규식, 조소앙, 박은식 등 14인은 한일합방 이래 지속되어
온 복벽주의를 종결하고, 「대동단결선언」을 제창함으로써 민주공화제로 방향을 전환하였
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대동단결선언」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我韓은 無始 以來로 韓人의 韓이오 非韓人의 韓이아니라 韓人間의 主權 授受난 歷史
上 不文法의 國憲이오 非韓人에게 主權 讓與난 根本的 無效오 韓國 民性의 絶對 不許
하난 바이라 고로 庚戌年 隆熙皇帝의 主權 拋棄난 卽 我國民同志에 對한 默示의 禪位
니 我同志난 當然히 三寶를 繼承하여 統治할 特權이 있고 ○大統을 相續할 義務가 有
하도다.

이 선언서는 첫째, 융희황제(순종)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황제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지

43) 대동단결선언은 본문과 ‘제의의 강령’ 7개항, 선언일자와 서명자, ‘찬동통지서’와 회신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조동걸 1987, 148. 150). 「대동단결선언」 원문은 이 글의 부록을 참조. 提議의 綱領의 핵심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大憲을 제정하여 民情에 合한 法治를 실행할 것 4. 獨立平等의 聖權을 주장하여 同化
의 魔力과 法治의 劣根을 防除할 것(…) 7. 右實行方法은 既成한 각 단체의 代表와 德望이 有한 個人의 會議로
결정할 것.

국민이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이 주권을 양여 받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민권론자들이 주창했던 '천부인권론에 근거한 주권'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민족국가의 고유한 것으로의 주권', 즉 상실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주권'의 '우선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셋째, 그러므로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서 임시정부 - '제2차의 통일국가' -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수립하기 위한 '제1차의 통일기관'(민족대회)을 구성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였다(조동걸 1987, 127-128; 김소진 1998, 70).

요컨대 대동단결선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부의 수립', 곧 민주공화제 수립을 지향하였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한일합방이후 지속되어 온 신한혁명당 등의 복벽주의를 종결한 선언이며, 이들의 임시정부 구상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현실화 되었다.

2. 「대한민국헌법」의 기원과 원형: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⁴⁴⁾

1) 3. 1운동의 반군주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1919년의 3.1운동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민족주의적·민주공화주의적 이념을 지향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3.1운동을 표현하였다.

존경하고 경애하난 아(我)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원년 3월 1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함으로브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一致코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조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아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난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국회도서관편 1974, 30).

즉, 3.1운동은 민족 내부의 모든 사회적 차이를 뛰어 넘어 참가자들 사이의 수평적인 일체감을 고취시켰다고 본다.

주목해야 될 점은 3.1운동이 민족 외부와의 투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민족내부와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3.1 운동이 반제국주의 운동이자, 반군주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이 일어난 40일 이후,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형식상) 국내 13도의 대

44) 이 부분은 서희경(2006) 156-160쪽의 수정임.

표가 입법기관(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수립되었다.⁴⁵⁾ 그런데 이와 같이 탄생된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1941년 11월에 공포된 「건국강령」 총강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국강령(建國綱領)

(...) 5.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우리 민족의 3.1血戰을 발동한 元氣이며, 同年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異族專制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舊習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국회도서관편 1974, 2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의미를 두 개의 '독립'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안과 밖의 지배에 대한 부정, 곧 자기지배(self-rule)의 요구이다. 그리고 그 주체를 군주가 아닌 민족과 인민으로 상정했다.

임시정부는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와 군주정치를 부정하고 독립적 공화정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계급)를 부정하고,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을 건립했다. 즉,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민족과 인민의 公敵을 공식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치적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나아가 향후 1세기에 걸쳐 근대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이상의 비전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⁴⁶⁾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

45) 3.1운동 발생이후 국내외 6 곳에서 임시정부가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헌장과 선포문, 취지문, 격문 등을 갖추고 정부의 형태를 취한 임시정부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노령에서 조직된 대한인국민회의(1919년 3월), 국내 한성에서 조직된 한성정부 국민대회(1919년 4월)였다(이현희 2003).

46)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문서인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이 (1)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 이를 기초하는데 참고 가능했던 자료는 어떤 것이었으며, (3) 총 10조의 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신우철(2004. 4)을 참조할 것. 신우철은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헌법문서들 가운데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국회도서관편 1974, 3).

이 시기에 민주공화제와 인민의 평등 및 자유를 표방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국내외 단체가 이런 원칙에 동의했다.⁴⁷⁾ 1919년 4월 23일에 개최된 국내 한성정부 국민대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⁴⁸⁾ 한성정부국민대회는 민주제, 대의제, 국민의 자유·권리의무 등을 지지하고 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대한민국헌법」의 원형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귀국할 때까지 5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헌법체제를 지속하였다. 영토, 주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헌법안의 제정과 수정을 거듭한 것은 주목할만한 정치행위였다. 그것은 헌법이 정부 정당성과 합법성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앙 정부를 자임하지 않은 단순한 독립운동단체의 하나였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체제를 지속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헌법체제의 변경과 지속을 넘어 더욱 중요한 점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런의미에서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은 이후 등장한 많은 헌법안의 일종의 원형헌법(proto-constit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전과 「대한민국헌법」과의 연관성 및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체계 및 용어상에 있어 「대한민국헌법」과의 고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22)과 「대한민국헌법」(1948)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장,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47) 한편 3.1운동 후 미국에서 최초로 소집된 한국인의 정치집회(1919년 4월 14일-16일)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임병직, 조병옥, 장택상 등이 참가하여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대한인총대표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였다. (김원모, 「서재필의 재미한인회의록 첫 공개」 200) 유영익은 3.1운동 후 국내외에서 선포된 다른 임시정부들의 예와 비교하여, 필라델피아 대표회의에 참가자들이 특히 “신대한의 정체가 미국식 공화제 즉 대통령중심제일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를 소개하는 글에서 “우리나라를 회복한 후 정부를 미국제도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본하여, 공화정치와 기독교 문명을 숭상하는 나라를 만들어 종교와 통상과 언론 등 모든 사회의 자유를 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신한민보 제536호 1919/04/08; 유영익 2004, 382-385)

48) 「한성정부국민대회약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위운을 증진케 함.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편 1998, 26-29]. 1919년 4월 23일 종로일대에서는 ‘國民大會’와 ‘共和萬歲’ 깃발 아래 만세시위가 있었고, 전단을 통해 ‘한성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세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특히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22)과 「대한민국헌법」(1948) 거의 동일하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적 틀이 명백히 독립 이전의 1944년 헌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1> 「대한민국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민국헌법」⁴⁹⁾

명칭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22)	대한민국헌법(1948. 7. 12)
전문	(3월 1일) 독립국과 자유민 선언 임시정부임시헌장 (1919. 4. 11) 계승	3.1대혁명정신	3.1운동
총조항	제8장 58조	제7장 62조	제10장 제103조
총장	제1장(제1조) 인민주권(제1조)	제1장 (제1조-제4조) 민주공화국(제1조) 인민주권(제4조)	제1장 (제1조-제7조) 민주공화국(제1조) 국민주권(제2조)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제10조) 인민 평등, 신교, 재산의 보유, 영농의 자유,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	제2장 (제5조-제8조) 언론출판집회결사 파업 (...)선거권피선거권, 재산권의 보장, 준법 병역 공역 납세의 의무 (...)	제2장 (제8조-제30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주거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 근로자의 단결권, 이익균점권,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선거권, 피선거권
입법부	제4장 임시의정원 (제18조-제34조)	제3장 임시의정원 (제9조-제28조)	제3장 국회(제31조-제50조)
행정부	제3장 임시대통령 (제11조-제17조) 제5장 국무원 (제35조-제41조)	제4장 임시정부 (제29조-제44조) 주석제	제4장 정부(제51조-제75조) 대통령제
사법부	제6장 법원 (제42조-제47조)	제5장 심판원(제45조-제56조)	제5장 법원(제76조-제83조)
경제			제6장 경제(제84조-제89조)
회계·재정	제7장 재정 (제48조-제54조)	제6장 회계(제57조-제60조)	제7장 재정(제90조-제95조)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제96조-제97조)
부칙/ 헌법개정	제8장 보칙(제55조-제58조) 헌법개정(제57조)	제7장 보칙(제61조-제62조) 헌법개정(제61조)	제9장 헌법개정(제98조) 제10장 부칙(제99조-제103조)

49) 서희경, (2006), 157-158 쪽의 도표를 수정.

둘째는 헌법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의 연속성이다. 기본적으로 세 헌법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였고, 민주공화국,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상의 기본 원칙들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일치하고 있다. 우선 각 헌법안의 전문에서 동일하게 3.1운동 정신을 기본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1]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복하였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원년 4월 11일에 발표한 11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써(...)⁵⁰⁾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22)>

[2](...)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墜向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⁵¹⁾

<대한민국헌법(1948. 7. 12)>

[3](...)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체제도를 수립하여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을 제정한다.

요컨대 3.1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 민주독립국가 수립의 헌법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신의 계승을 넘어 헌법 원칙으로 조문화, 구체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제)에 관한 규정 역시 일치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순한 국호의 계승을 넘어 국체 역시 사실상 변함이 없었다. 7개의 헌법(안)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50) 국회도서관편, 앞의 책, 4쪽.

51) 위의 책, 15쪽.

<도표2> 민주공화국과 국민(인민)주권 조항의 변천

헌법안 명칭	제정년도	민주공화국·국민(인민)주권 내용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 4. 11 제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 9. 11, 제1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대한민국임시헌장	1925. 4. 7, 제2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함.
대한민국임시약헌	1927. 3. 5, 제3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 10. 9, 제4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 4. 22, 제5차 개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대한민국헌법	1948. 7. 12 제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직도 적지 않은 연구는 한국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적 규정과 표현이 194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미국점령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표는 민주공화주의 사상 및 체제의 헌법적 연원과 전개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한국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이후 1925년 「대한민국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 등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넷째,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한 주권에 관한 규정 역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인민주권은 군주제의 특권을 타파한 인민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것이 결여된 인민주권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임시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도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나 원리는 설사 ‘자유’의 원리라 해도 국가에 의해 규제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균주의의 체계적 해설서인 「한국독립당당강천석」⁵²⁾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다. 헌법에 삽입된 한국의 근대 정치사상체계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의 본질, 국가의 역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이보다 더 선명하게 그 헌법적 원칙을 천명한 문서는 찾기 어렵다.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죄악을 선동하거나 치안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기치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⁵³⁾

III. 1945-1948년 시민사회 헌법(안)⁵⁴⁾의 민주공화제

이 장에서는 해방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헌법안의 기초과정을 연속적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여 이들 헌법안 및 헌법구상이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칙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이 다수 집단의 헌법기초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것임을 살펴보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기초자들이 헌법을 만드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⁵⁵⁾

헌법(constitution)이란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政治像(political ideal)에 기초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정치적 방안에 의해 실현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협약(social contract)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특정한 정치지도자의 교시나 법률 전문가의 기술적 산물이라기보다 정치집단 간의 오랜 동의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공동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정치적 콘텍스트 속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2) 이는 삼균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임정의 기관지인 『光復』(제1권 제3기, 1941. 5.20)에 실린 글로서 필자는 四平으로 되어 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용상 조소앙으로 추측된다.

53) 추헌수편, 1972. 『자료한국독립운동 2』. 연세대학교출판부. 146쪽.

54)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헌법안 등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試案)」, 「임시헌장」 및 미소공동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답신안」, 중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안), 「시국대책협의회답신안」, 그리고 우파인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과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답신안」 등이다.

55) 특히 후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나 아렌트는 ‘헌법’의 용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것은 ‘입헌행위’-정부 형성 이전의 행위-와 ‘입헌행위의 결과’-성문화된 문서-를 말한다. 선행 헌법 연구에서는 종종 후자의 의미만이 주목되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으로써는 미국의 건국 기초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권위체를 창출해야만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헌법제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상호동의가 권위의 최고 원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2004. 『혁명론』. 한길사. 324.

해방 전후에 등장한 다양한 정치사회 단체들은 자율적인 국가 수립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려 시도했다.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시민사회의 국가 건설 및 헌법 작성 참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 수립 준비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참여할 정당사회단체의 자격에 대해 미소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등 미소공위를 통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은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렇지만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수립을 대비한 헌장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각 정치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미소공위 활동이 지속되었다면, 남북한의 각 정치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헌장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마련되었을지도 모른다. 1946년 1월 7일에는 임시정부 수립 절차에 관한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좌우중간파가 협의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조선 문제 결정에 대한 공동코뮤니케 작성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7월에는 좌우합작 회담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7년에도 여전히 각 정파들은 분리된 채 미소공위 답신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당시의 답신안 제정자들은 헌장을 작성하여 미소공위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했을 뿐 헌장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모색하고 토의 과정 및 그 내용을 채워가는 행위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미소공위는 1946년 4월 제5호, 제6호 성명을 통해 조선 내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할 항목을 채택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의 기구 및 조직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출할 것”과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정강, 기타 적의한 법규문제를 작성할 것” 등이다(동아일보, 46/04/19; 조선일보 46/04/25). 이러한 미소공위 공동성명의 내용은 헌법의 골격을 형성하는 내용들이다.⁵⁶⁾ 아래에서는 각 정파별로 모색된 헌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좌파의 「임시약법(試案)」 · 「임시헌장」 · 「민주주의민족전선답신안」

좌파의 집결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의 헌법안 기초과정은 미소공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되고 등장한 것이었다. 민전은 미소공동위원회 자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 ‘승인’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첫째, 유진오 「헌법기초관계자료」에 포함된 「조선민국

56) 그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 지방행정기구의 조직과 원칙에 관한 건 1) 인민의 권리 2) 앞으로 수립될 임시정부의 일반체제와 성질, 3)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입법권 시행기구 4) 지방행정기구 5) 사법기구 6) 임시헌장의 변경 및 수정방법 (나)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정강에 관한 건 1) 정치대책 2) 경제대책 3) 교육 및 문화대책(서울신문 46/05/03).

공화국임시약법(시안)」(이하 임시약법) 겉표지에 “1946년 제1회 미소공위에 제출하라고 준비되었든 민전측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시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둘째, 「민주주의민족전선 답신안」에 내각 구성이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의 건의에 기초하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조직되며 4개국 승인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민전의 「임시약법」을 살펴보면, 이 안의 정확한 기초 경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임시약법」은 허헌 등 소수의 민전 관계 법률가들이 비밀리에 작성했던 것이며, 또한 사적인 루트를 통해 유진오 등의 헌법전문가에게 이 약법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법 제정절차는 집단적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취하는 그들의 약법의 내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더욱이 「임시약법」은 민전이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임시의회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민전의 「임시약법」은 전문은 없고, 「조선민주공화국 임시국가조직약도」를 포함하여 총 9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유진오의 기록이 맞다면, 「임시약법」은 1946년 4월 21일 민전이 발표한 보다 공식적인 성격의 「임시헌장 정부 및 행정기구조직요강」(이하 「임시헌장」)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앞서 제정되었다는 「임시약법」이 이후에 발표된 「임시헌장」과 「답신안」에 비하여 훨씬 체계적이다.

「임시헌장」은 민전 중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의장 이여성이 보고한 것인데, 현재는 총 39항 중 19항의 정부 및 행정기구조직 요강의 내용만 알 수 있다. 「임시약법」을 「임시헌장」 및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답신안」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경우, 「임시약법」과 「임시헌장」, 「답신안」은 거의 동일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권을 계승하고 있다. 특별히 「임시약법」에는 ‘중소개인자본의 기업경영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임시헌장」에는 ‘재산사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 형태 및 조직과 관련해서는, “인민이 주권자가 되고, 인민의 복지와 행복을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 향상하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적 인민 정부’를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직으로서는 최고기관으로서 임시정부단계에서는 내각, 정식정부 단계에서는 인민대표대회를 두고, 조선내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를 광범하게 참가시켜 행정과 입법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임시약법」과 「임시헌장」에서 동일하다. 「임시약법」에는 잠정 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이 약 1000명 - 임시헌장에는 600명 -이며, 그 중에서 약 300명 -임시헌장에는 200명 -을 잠정 인민 의회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좌파 민전은 권력의 기원을 인민과 인민 회의에 두어 인민중심의 ‘계급연합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조선인민보, 1946/04/21) 주지하듯이, 이러한 인민민주주의 이론은 북한 헌법 제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이례적인 것은 “조선공화국의 원수를 임시대통령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한 「임시헌법」과 대통령이 “국가행정을 통할하며 국외에 대하여 국가 및 정

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 「임시헌장」과는 달리, 「답신안」에서는 “대통령을 單獨制機關으로 하여 거기에 권력을 모다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아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의 조선에는 더욱 타당치 않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새한민보사편 1947, 43) 민전의 6호에 대한 「답신안」에서는 “조선 인민의 총선거가 실시되기까지는 대통령제 또는 주석의 제도를 채용치 말고 수상 또는 부수상회의제도를 채용하며 각부는 그 책임자와 부책임자의 회의결정제도를 채용하고 내각회의에 최대의 구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새한민보사편 1947, 104). 즉, 좌파 민전의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구성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집단적 민주주의 정치제도, 특히 인민위원회제도는 개인의 권력 전횡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요컨대 민전의 정부구성의 원칙이 되었던 인민민주주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권력을 다수에게 평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반면, 다수 인민의 지배 속에 소수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공화주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표3>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試案)」·「임시헌장」·「민주주의민족전선 답신안」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試案) 1946년 1-2월 기초	임시헌장정부및행정기구조직요강 1946년 4월 21일 발표 ⁵⁷⁾	민주주의민족전선 답신안 1947년 7월 제출
제1장 총강(제1조-6조) 조선민주공화국(제1조) 인민주권(제4조)	1. 국가의 전 권력은 인민에 속함	임시정부의 일반적 형태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주권, 민주주의적 인민정부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제7조-21조) 평등권(제7조) 강제와 금지를 받지 않을 자유(제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제9조)	1. 인민은 법률 앞에 일체 평등함 1.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000000 문화, 사회, 생활의 각 영역에 나아갈 권리가 보장됨.(…)	1. 민권 1. 인민은 성별, 재산, 사회출신, 교육, 신앙 등 여하를 불구하고 법률의 앞에 절대 평등하다.(…)
제3장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제22조-30조) 조선임시민주정부가 수립된 후 1년 이내에 정식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할 의무(제24조) (…)	1. 정식 선거에 의하여 정식 인민대표대회가 성립될 때까지 잠정 임시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이것을 최고권력기관으로 함. (…)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행할 중앙정부의 기관 혹은 기관들 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관을 창설하기 전에 조선임시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4장 인민의회 및 상임의회(제31조-45조)	1. 잠정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속에서 잠정인민 의회의원(약200명)을 선출하여 잠정인민의회를 구성함. (…)	
제5장 임시대통령 및 임시민주정부(제46조-70조)	1. 대통령은 국가행정을 통할하며, 국외에 대하여 국가及 정부를 대표함. (…)	대통령 1인을 단독기관으로 하여 거기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
제6장 사법(제71조-83조)	1. 재판소(…) 1. 검찰소(…)	
제7장 군사(제84조-제91조)	1. 군사위원회 (…)	
	1. 지방은 중앙 (해독불능) 야 잠정 지방인민위원회, 잠정지방인민00 (해독불능) (…)	
제8장 재정(제92조-102조)		
제9장 약법수정(제103조)		

57) 1946년 3월 21일 제2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민전의 강령과 거의 동일함. 강령의 전문은 「조선해방연보」 107-115; 민주주의민족전선편, 『조선해방 1년사』 (경성: 문우인서관, 1946)(MF); 『해방조선: 지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투쟁사』 (과학과 사상, 1999)으로 재발간.

2. 중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

1946년 초부터 비교적 공개적으로 헌법작성을 논의한 정치사회단체는 「비상국민회의」였다. 이점은 앞서 살펴본 민전의 「임시헌법」 작성과정과 상이했다. 임시정부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단체가 헌법작성을 첫 번째 당면과제로 채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조직에 참여한 다수 인물들은 개헌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헌법안을 기초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작업을 새로운 헌법 제정이 아니라 임시정부 헌법의 개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그 이유는 임정 관련자들이 임정의 유일 정통성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임정 관련자들은 해방 후 신생국가건설에 있어서 임정의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예컨대 조소앙은 “국무위원 자격은 20년 동안 독립운동에 전사한 자로 한정을 하자”고 주장하였다.⁵⁸⁾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정치적 현실로서 실현될 가능성은 전무했다.⁵⁹⁾

미군정뿐만 아니라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을 포함해 이미 국내에서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8년 1월 1일 김준연은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나는 작년 春에 민주위원에 있어서 헌법문제 토의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해외파에서는 「대통령은 30년 이상, 국무총리는 20년 이상, 각부부장은 10년 이상 독립운동을 유일한 취지로 하여 계속해서 활동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하였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국무총리는 그래도 좋으나 각부부장에 부하여는 그런 문항을 붙일 필요가 없다. 국내에 있었던지 해외에 있었던지 막론하고 각부부장에는 적재적소주의로 나가야 한다. 만일 당신네들 주장대로 하면 국내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부장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었다.⁶⁰⁾

해외파는 조소앙 등의 임정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소앙은 해방된 후의

58) 이인, 1974.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출판부, 181. 조소앙은 비상국민회의 정무위원회에는 선임되었으나, 헌법 선거법 수정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또한 그는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위원회의 헌법대책위원회가 아닌 임시정부수립예비방안위원회, 선전위원회, 재외동포원호위원회 등의 명단에 들어 있다. 그러나 조소앙은 미군정으로부터 김봉준과 더불어 민주위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 기초과정에 참여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연, 「신조선 건설의 구상」, 《동아일보》 1948년 1월 1일자 참조.

5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과도한 임정법통론이 오히려 한민당 등 우익을 강화시켜 주었고 반면에 중간파 결집 및 그 노선을 좌절시켰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할 것(정상우, 2007.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12).

60) 《동아일보》, 1948년 1월 1일자.

새로운 헌법 제정을 임정헌법의 개정으로 인식했다. 조소앙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근대 한국의 헌법과 헌정을 독립운동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성찰해왔던 인물이었다(서희경·박명림 2007, 82).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는 헌법선거법기초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선출 방법에 관하여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⁶¹⁾ 2월 10일 비상국민회의는 헌법선거법수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병로, 부위원장에 이인을 선정하였다.⁶²⁾ 이들은 모두 임시정부 헌법안 기초 주축세력이 아닌 인물들로서 당시 사법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후 이들은 미군정청의 사법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유진오 역시, 자신은 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지만 그도 선거법분과위원회에 명단에 들어있었다.⁶³⁾ 그리고 이 기구의 명칭이 헌법기초위원회가 아니라 수정위원회였던 것도 흥미롭다(서희경·박명림 2007, 92). 비상국민회의는 이 날 “과거 6·7차나 수정하여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그대로 계승할 것과 그 외 다른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작하여 기초”할 것을 결의하였다.⁶⁴⁾

한편, 1946년 4월 2일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대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비상국민회의에서 활동했던 김봉준, 최익환, 김도연 등을 선임하였다.⁶⁵⁾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유진오의 「헌법기초관계자료」에는 이 민주의원에서 작성된 「대한민국임시헌법」(총 6장 74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 헌법안의 기초경위를 당시의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2월 14일,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은 과도정부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미군정청내에 개원되었다. 민주의원 의원은 앞서 언급한 비상국민회의 조직에서 추천하고, 미군정이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었다.⁶⁶⁾ 그러나 3월 19일 민주의원 의장인 이승만이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인민당을 대표한 여운형이 참여를 거부했고, 이후 의장대리 역할을 했던 김규식도 좌우합작운동에 주력하여 민주 의원은 독자적으로 활동하

61) 이날 진행된 비상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의사규칙 8개조와 비상국민회의 조직대강 15개조를 통과시켰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學振興研究事業 推進委員會 編1997.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 4』(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69-870).

62) 헌법선거법수정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金炳魯, 安在鴻, 崔東昨, 金若水, 金用茂, 姜柄順, 曹晚植, 元世勳, 金朋濬, 金俊淵(이상 헌법분과위원회 총 10명), 李仁, 俞鎮午, 張澤相, 趙炳玉, 高秉國, 韓根祖, 趙擎韓(이상 선거법분과위원회 총 7명) 申翼熙, 高昌一, 李鳳九, 金鼎禹, 鄭寅普, (이상 의원법분과위원회 총 5명). 《조선일보》, 1946년 2월 12일자.

63) 국회도서관편. 1958. 7. 「국회보」 제20호 31; 유진오, 1980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3.

64) 《조선일보》, 1946년 2월 12일자.

65) 《서울신문》, 1946년 4월 3일자.

66)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은 “과도기의 대표기구”(미군정과의 협상 대표로서), “미군정의 자문기구”, “각당각파의 연석회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기하 1961. 『한국정당발달사』; 한태수 1961, 『한국정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대한민국정당사; 김혁동 1970, 『미군정하의 입법의원』)

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의원은 비상국민회의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헌법안을 작성하였다.⁶⁷⁾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는 “헌법기초도 기초위원 5명을 선정하여 비상국민회의에서 선정된 기초위원과 전문가와 연락하여 기초를 마치고 민주의원에 상정하여 수정 통과되었다는데 내용은 嚴秘에 부하므로 전연 窺知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다.⁶⁸⁾

비상국민회의 헌법선거법구성위원회 위원 22명중 헌법과에 소속되었던 안재홍, 원세훈, 김봉준, 김준연 등이 민주의원 각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양 기구에 모두 참여했던 이들 중 김준연은 민주의원인 비상국민회의로부터 발원한 기구이며, 비상국민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능을 계승한 기구임을 주장하고, 이들 조직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⁶⁹⁾

흥미로운 점은 민주 의원이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이 국호 및 정체, 주권, 기본원칙, 이념의 측면에서 한국헌법체제의 기원과 원형을 형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서희경·박명림 2007, 86-87) 그런 점에서 김준연의 주장대로 민주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을 실제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 의원은 미군정청 산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었던 기구이며, 따라서 우파적 경향의 헌법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연속성이 강한 헌정구상을 담은 헌법을 작성하였다.⁷⁰⁾ 이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정구상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헌법구상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의 특징을 검토하자. 첫째, 기본권의 측면에서 「임시헌법」은 균등권을 우선 강조하면서도 근대적인 자유권을 구체화하였고, 반면 민전안은 국유화를 우선 강조하면서도 사적소유권도 인정하였다.

둘째,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임시헌법」은 대의제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제를 취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민전의 인민위원회제와 구별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채택한 정부형태는 서구의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임시정부

67) 김수용, 2007.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50-51 참조.

68) 「미소공동회담과 민주의원: 전권수립의 성안 완료」 《동아일보》 46/04/02.

69) 김준연, 1947. 『독립노선』. 서울: 시사시보사. 47.

70) 민주 의원은 1946년 3월 18일에 「임시정책대강」 27개조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계획경제에 입각한 균등사회 건설이었다. 즉 균형균등이념을 추구했던 임시정부의 헌정구상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 보다 앞선 1946년 2월말 이승만(당시 민주의원 의장)은 「과도정부당면정책 33항」을 발표하였는데 이 헌정구상도 균등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1946년 6월 3일 이승만에 의해 정읍 발언에서 보다 명확히 표현되었던 바와 같이, 1945년 해방 전후이래로 우파의 경우, 좌우합작의 가능성을 부인했고 반탁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의 이러한 중간 지향적인 발표는 오히려 과도기적 헌정구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희경 2007. “현대 한국헌정과 국민통합, 1945-1948: ‘단정파’와 ‘중도파’의 정치노선과 헌정구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19).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이들 헌법안 및 답신안은 첫째, 민주공화제, 보통선거제에 의한 국민의회 구성, 대의제, 권력분립 등을 추구하였다. 둘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기초로 한 균평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으며, 셋째, 적산 몰수, 주요 중공업·광산·산림 등 국유 국영, 농민의 경작 능력에 의존한 대지주 토지 및 몰수 토지에 대한 재분배 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토지 개혁과 적산처리문제, 친일파 처벌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강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표 4> 「대한민국임시헌법」 · 「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 「대한민국임시헌법」 (1946년 3월말 또는 4월 기초)	시국대책협의회 「답신안」 (1947년 7월 제출)
제1장 총강(제1조-제4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전체에 속함 제3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임시정부의 일반적 형태 혹은 성격 1. 조선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속함 정권형태는 전국민을 대표하는 민주공화정체라야 하며 일부계급만의 공화정체 허용하지 못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제5조-제10조) 제5조 대한민국 국민은 좌기 각항 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권을 향유함 1. 국민의 기본 생활을 확보할 계획경제의 수립 2. 주요한 생활필수품의 통제관리와 합리적 물가정책의 수립 3. 세제의 정리와 누진율의 강화 4. 토지사유의 제한과 농민본의의 경작권 수립 5. 대규모의 주요공업 및 광산의 국영 또는 국가관리(…)	민권 1. 조선인민의 정의 조선에 국적을 가진자 (…) 2. 주권의 소재(…) 3. 자유권 4. 재산권 5. 선거권(…)
제3장 입법권(제11조-제19조) 제11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민의회에 속함 제12조 국민의회는 각도·시·부·군·도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함. (…) 제15조 국민의회는 대통령이 소집함(…)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행할 중앙정부의 기관 혹은 기관들 (…) 미소공위 대상의 각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회로 임시입법권을 대행함이 가하다(…) 입법기관 전국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국회를 둔다 국회는 단원제로 하고 (…) 국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행정권(제20조-제65조) 제1절 대통령, 부대통령 (…)	(나) 이상 정무를 수행하는 기관 혹은 기관들의 성질 및 구성 행정기관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부대통령제를 채용하고 대통령직속하에 국가결의기관으로 국무위원제를 채용하는 (…)
	지방정권체의 구성조직 권한 및 책무
제5장 사법권(제66조-제71조)	사법기관
제6장 회계(제72조-제74조)	
	기타 국호는 고려공화국이다(…)

3. 우파의 「한국헌법」과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안」⁷¹⁾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은 당시 우파 진영에서 제시된 가장 체계적인 헌법안이었다. 먼저 이 헌법이 탄생된 배경 및 기초과정과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17일에 첫 모임을 가진 행정연구위원회는 신익희가 주도하여 약 70명⁷²⁾의 식민시대 고등문관 출신인물들로 조직되었다.⁷³⁾ 행정연구위원회의 제헌활동을 살펴보면, 민전만큼은 미소공위 활동에 민감하지 않았던 듯하다. 또한 이들은 식민지 시대의 대일협력으로 인해 중간파와 같이 임시정부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있는 법률 전문가를 갖고 있었다. 1946년 3월경에 이 그룹의 최하영, 이상기, 장경근, 윤길중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헌법을 기초하였다.

무엇보다도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안 작성의 가장 큰 의의는 후일 「대한민국헌법」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는 유진오가 작성하는 헌법안과 조우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 - 이른바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합작안 -의 토대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이다. 헌법제정에 유진오, 이승만 못지않게 신익희와 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서희정·박명림 2007, 98) 건국헌법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윤길중의 회고에 따르면, 행정연구위원회 조직 등 헌법제정과정에서의 신익희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⁷⁴⁾ 실제로 1948년 총선 이후 정부수립 일정이 구체화되자 행정연구위원회는 자신들의 '1단계 헌법초안'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유진오와의 협력을 직접 요청하였다.

한국헌법은 총7장, 부칙, 제2편 88조로 되어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헌법안은 국가의 조직(제1편)이 국민의 권리의무편(제2편)에 앞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마르헌법의 영향 때문이었다.⁷⁵⁾ 그러나 이 헌법안의 구성이 설사 바이마르헌법과 동일하다해도 이러한 체제를 택했던 것은 최

71) 새한민보사편, 1947, 『임시정부수립대강: 미소공위자문안답신집』, 16-40.

72) 이종구에 의하면, 80명이다(이종구,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신동아』 (1965.8, 297). 미군 방첩대(CIC)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연구위원회 위원은 약 70명이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편), 『현대사자료총서 I: 미군 CIC 정보보고서 I(RG 33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선인문화사, 1996), 416-421).

73) 최하영, 「정무총감, 한인과장 호출하다」, 『월간중앙』 (1968. 8) 134-135; 박진희,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역사연구회편, 『역사와 현실』 제21권(1996. 9), 172, 173-174.

74) 그는 행정연구위원회 위원과 유진오와의 헌법 작성 공동작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가 6, 7개월만에 헌법초안을 만들었을 때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계열로 공법학자인 유진오 박사를 영입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연구한 헌법안을 갖고 있었다. 또 임정에서 작성한 헌법과 사법부에서 만든 헌법안 등 각계에서 헌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제헌국회에 제출, 심의한 헌법안은, 이중 어느 것이라고 지적할 수 없으며 입법의원에서 6,7개월 만에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하여 각계의 헌법안을 참작, 약 2개월만에 헌법안이 완성되었다. 윤길중, 1991, 『청국윤길중회고록: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서울: 호암출판사), 79.

75) 최하영, 앞의 글(1958); 홍기태, 앞의 논문, 24쪽.

하영의 다음과 같은 헌법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은 역시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권력의 구조, 국가권력의 행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요. 그런데 「불란서」나 「영국」은 인권이 소중하다고 해서 인권규정을 헌법의 첫머리에 내놓고 있죠. 이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국민들의 민권옹호 투쟁하에서부터 입헌민주국가가 출발한 것이므로 그러한 헌법조문 나열체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권옹호투쟁의 정치적 의의라고 할까 역사적 의의는 희소하고 오히려 상실하였던 국가를 찾는다는 점 즉, 광복한다는 점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특수성이 있지 민권투쟁에 의한 즉 민주혁명에 의한 건국이 아닙니다.⁷⁶⁾

즉, 행정연구회 헌법분과위원들은 헌법을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권력의 구조, 국가권력의 행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그리고 헌법제정행위에 대한 접근은 이들이 헌법을 만드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안은 「대한민국임시헌법」과 마찬가지로 제2편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에 경제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내용도 당시 시민사회 헌법안 중 가장 상세하다. 「한국헌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계약 및 영업의 자유, 소유권의 보장, 토지의 분배 및 이용원칙, 공공성을 가진 기업 및 대외무역의 국가 공영, 노동정책(여자, 아동노동 특별보호, 결사의 자유), 사회보험(농민복지, 보험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헌법」은 당시 가장 우파적인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국민각개의 균 등생활의 확보”와 “민족전체의 발전” 및 “국가보위”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도 이 한계 내에서만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헌법」의 기본원칙은 임시정부 헌법 및 「대한민국 헌법」과도 거의 동일하다.

76) 최하영, 앞의 글(1958. 7), 43쪽.

<도표 5> 「한국헌법」·「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안」

행정연구위원회 「한국헌법」 (1946년 3월 기초)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안」 (1947년 7월 제출)
국민의 권리의무 국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권, 거주지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저작출판, 통신, 종교,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 선거·피선거권, 헌법 및 법률명령준수의무, 납세 및 병역의 의무, 공직취임권리와 의무,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한하여 자유와 권리 제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가위난, 공공이익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자유와 권리 제한배상청구권	一. 민권 1. 생명보장의 기본권 2. 자유권(인신, 주택불가침, 거주이전, 언론 저작 간행 집회 및 결사, 신서비밀, 신앙사상학문, 영업노동 및 계약, 기타 인간발달의 필요한 모든 자유) 국민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 사회의 질서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3. 재산소유권(불법한 재산의 징발 몰수 혹은 추세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 4. 국가기관에 대한 요구권(청원권, 진정권, 행정재판요구권, 법관심판을 받을 권리) 5. 참정권(공직취임권, 보통선거 및 피선거권) 6. 평등권(법률상 평등우대권, 계급특권 불허권, 경제적 기본생활 균등권, 문화후생의 균점권)
국가의 조직 국가 한국은 민주공화국 한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발함	二. 수립할 임시정부의 일반적 형태 혹은 성격 1. 국호 대한민국 2. 국체 민주공화국의 단일국가(비연방국가) 3.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전체에 속함.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발원하지 아니하는 권력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일부계급만의 독재정치를 허용할 수 없다.(...) 6. 정제 삼권분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이후 등장한 다양한 시민사회 헌법안의 내용과 기초과정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하여, 민주적이며, 공화적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그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특히 ‘민주공화국(제)’에 관한 역사적 기원을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기원을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과 1907년 황제퇴위사건,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변화된 민주공화정체 선언 등을 추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된 헌법 및 규약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들은 입헌군주제 지향으로부터 민주공화제로 이행했다는 헌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시기 등장한 헌법 및 규약들은 이후에 등장한 「대한민국헌법」의 이념(idea)과 원칙(principle), 그리고 구조(architecture)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 주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시원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3.1운동 정신, 민주공화국(제), 국민(인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기본 원칙들은 모두 「대한민국헌법」에 수용되었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1898년 만민공동회의 정치적 지향 이래 반전을 거듭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19년이래 이러한 기본원칙은 거대한 시대적 조류로 형성되었으며, 1948년 헌법기초시기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이념과 원칙을 취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둘째, 「대한민국헌법」탄생 이전의 헌법안들 중, 시민사회 헌법안들이 1948년 헌법의 기본 원칙과 그 내용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이승만과 소수의 제헌의원, 그리고 특정 법률전문가들’에 의한 1948년의 헌법기초과정을 헌법 제정을 위한 유일한 활동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다양한 정치세력의 헌법기초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1948년 헌법 제정과정의 보다 집단적이고 연속적인 작업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당시에 ‘건국’과 ‘정부수립’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전문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중략)”라고 하였다. 즉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상실한 국가의 회복, 즉 “재건”으로 해석했다. 이 글에서는 대외적 독립주권과 대내적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국가는 이미 1919년에 건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종합토론문

정해구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1948년 8월 15일의 의미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한국은 근대 이전에 하나의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를 형성해왔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고유 언어와 공동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것이 근대 진입과 더불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국권 탈취의 식민지배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역사적 국가'를 되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지만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통해 그 회복과 건설을 기대했던 '미래의 독립국가'(일제의 식민지배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찾고 그것을 새롭게 건설할 국가인)를 되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잃어버린 과거의 '역사적 국가', 그리고 일제 식민기간 동안 언젠가 그 회복과 건설을 기대했던 '미래의 독립국가'를 되찾은 광복(光復)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당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근대적인 민족국가(nation state)로서 자주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것은 완전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으로서 말 그대로 근대 국가의 '건국'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해방정국의 갈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사태는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귀결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민족 분열의 '남북 분단국가' 수립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남북 분단국가란 하나의 민족(nation)이 두 개의 국가체제(state, regime)에 의해 분열된 불완전한 민족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남한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완전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으로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굳이 그것을 '건국'이라 지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한 분단국가의 불완전한 '건국'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완전한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의미에서 '건국'이란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그 의미에서의 '건국'이란 말은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의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할 미래의 언젠가를 위해 아껴두어야 할 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등 일부 우파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로서 남한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뿐더러, 이를 통해 남한 분단국가 수립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등 우파세력의 긍정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지는 주장은 매우 우파적인 이념적 도그마로 우리의 역사 해석을 재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것을 '건국절'의 의미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 해석을 우파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협애화시키고 왜곡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한국 현대사의 평가와 인식

-광복 60년으로 계산하든, 정부수립 60년으로 계산하든 과거 60여년의 우리 역사는 매우 성공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근대 진입과 더불어 망국과 식민지배의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가, 또한 해방과 더불어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역경을 딛고 60여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 자체가 과거 60여년 역사의 성공을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의 과제는 아직 완수되지 못했다. 남북 분단국가 수립에 이어 남북 대치의 분단상황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그 과제가 아직 미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측면에서 압축적 근대화의 성과는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산업화의 경우, 그것은 그 초기의 경제성장의 성과가 개발독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한국경제를 지금의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의 경우, 독재에 저항하여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민주화가 천연되었던 제3세계에서 그 유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 60년의 역사가 근대화의 추진에 비교적 성공적인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비판적'이고 '성찰(省察)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성공이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인간적이고 불필요한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반공독재와 개발독재의 경험을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그 성과 못지않은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처럼 과거 역사를 이 같이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 같은 태도를 '자학사관'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에는 부분적인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은 비판적, 성찰적 역사 해석의 태도를 '자학'이라는 말로 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의 그러한 주장은 성찰과 비판 없는 승자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발전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있어서도 그렇다. 예컨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뉴라이트의 과대 평가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뉴라이트는 그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진보적 역사 해석에 대해 그것을 '친북적', '좌파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고자 하는데, 그것은 학문적 입장을 넘어선 일종의 역사 해석상의 '매카시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60년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라 한다면 그것을 성공시켰던 주체는 누구인가? 우선 민주화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주체는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적 이해의 추구가 아니라 민주화라는 사회의 공적 이해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주체는 이 같은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주고 이에 동참해주었던 국민들이다. 다음으로 산업화의 경우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그것을 주도했던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 같은 산업화에 기여했던 모든 국민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같은 산업화의 성공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의 개발독재의 폐해와 더불어 균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60여년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라 평가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그러한 성공의 역사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과거 60여년의 역사가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동시에 사회의 불평등과 복지체제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남겨놓은 것 또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런 차제에 과거 60년의 성공에 대한 공공연한 공치사가 이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미루거나 그것은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왔고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헌법 규범의 선언적 차원에서는 민주공화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 규범의 선언적 차원을 떠나 그 실체에 있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었는지, 특히 대한민국 역사의 초기에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체에 있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어야 할 것이다. 첫째의 조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의 조건은 대한민국이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나? 적어도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기 그리고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의 군부독재 시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던 것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었나? 공화국은 국가권력이 왕이나 소수의 특권층에 장악돼 있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국가의 통치가 인민 주권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남한 분단국가의 건설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한반도적 이해에 의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반공세력의 이해에 의해 위로부터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나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의 5·17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독재정권의 통치는 인민주권의 원칙 아래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공화국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뉴라이트 등이 1948년 8월 15일을 민주공화국의 등장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나는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 실제 내용을 갖추지 못한 단지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와 비교해서 남한의 체제가 그렇다는 점일 것이다. 후자의 주장은 남한이 그 당시 그 실제와는 관계없이 위로부터 주어진 민주주의의 형식과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타당성을 가질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등장을 민주공화국의 등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실제 내용에 있어 매우 빈약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그 실제 내용이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 이후에야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냈다.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역시 위로부터 동원된 참여가 아니라 인민주권의 의식 아래 아래로부터 그 정치 참여를 증대시켜나갔던, 그럼으로써 자신의 적극적인 의사를 통치에 반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인 이익에 기여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금도 형성중이며, 근래에 들어 분출했던 촛불시위 역시 공화국 형성의 한 주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문

대한민국, 1948년과 2008년

한홍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 역사의 내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내전을 치르고 있다.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건국절’로 기억할 것인가. 200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89주년인가, 아니면 건국 60주년인가.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을 겪으면서 민주화 운동은 현대사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군사정권은 1987년의 『한국민중사』 사건 등 공안탄압을 통해 역사와 기억의 부활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이후 국가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말살되었던 한국현대사를 광장으로 불러내었다. 친일과 민간인학살과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간첩조작 등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7차 교육과정 이후의 근현대사 교육과 2004년 이후 본격화된 과거청산 작업은 한국의 수구세력의 뿌리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탄핵에서 부활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포괄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전개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 위기상황에서 수구세력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뉴라이트였다. 한때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운동에 몸담았다가 변절한 뉴라이트들의 등장으로 역사의 내전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근현대사 교과서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다. 뉴라이트는 이제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정부 역시 뉴라이트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를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여러 과거사 위원

회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올해 초에 펴낸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통해 친일파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를 군사독재정권의 국정교과서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최소한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친일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집권세력조차도 친일 반민족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⁷⁾ 그런데 뉴라이트들의 이른바 대안교과서가 노골적으로 친일을 미화하면서 독립운동을 깎아내리고 이들이 광복절을 없애고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광복절이라면 당연히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일을 8월 15일로 택한 이승만조차도 정부 수립 또는 건국과 민족의 광복을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복절을 정부 수립일로 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뉴라이트나 집권세력은 이승만도 깜짝 놀랄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광복과 건국이 경쟁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광복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광복을 지움으로써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⁷⁸⁾

2.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뉴라이트들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냐면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내세운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찾는 말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다. 그러나 한번 따져보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의 근거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1919년에 3.1운동의 성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와 제헌헌법 이외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임시정부의 주도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시정부가 표방한 강령과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범 김구 선생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주류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한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 백범의 암살범은 집권세력의 비호 하에 호의호식했다. 인물은 그렇다쳐도 강령과 정책은 얼마나 계승되었을까. 건국강령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산업 국유화, 경제유전의 원칙에

77) 줄고, 『내일을 여는 역사』 32호

78) 줄고, 「건국절? 차라리 8·29를 '문명절'이라 해라」, 『프레시안』 2008년 8월 4일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4064958

따른 토지개혁, 친일청산,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군사주권의 회복, 즉 중국 정부로부터의 작전지휘권 환수를 관철시켰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좌파는 물론이고 중간파도 참여하지 않고 우파들이 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을 나름대로 계승하였다. 전문에서 3.1운동의 계승을 분명히 했고 부칙에서는 친일청산 과제를 실현을 위해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누가 반민족행위자이나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으나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이라는 대원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산 자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헌법 기초의 실무주체들 중 상당수는 친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이라는 대원칙은 부인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친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산지식계급 중심의 한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는 제헌헌법의 경제조항(84조)은 “서구에서 발전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개념을 넘어서는 강한 통제경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수정을 넘어 오히려 사회주의 정신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⁷⁹⁾ 헌법 기초의 실무자로 대한민국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현민 유진오는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하였다는 전제 아래, “일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장점인 각인의 자유와 평등 및 창의를 가치를 존중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일견 대립되는 두 주의가 한층 높은 단계에서 조화되고 융합되는 새로운 국가형태를 실현함을 목표로” 삼는다고 강조했다.⁸⁰⁾ 더구나 제헌헌법은 18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보장했다. 이는 우리 헌법의 “특색”으로 노동자가 단순히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의 이윤을 분배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인데, 유진오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¹⁾ 1950년대의 집권여당인 자유당도 기본강령의 2항에서 “우리는 독점경제 패자(覇者)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 기업가 및 기술 있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여 빈부차등의 원인과 그 습성을 해부하고, 호조호제(互助互濟)의 주의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함”이라

79)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6, 한국학술정보, pp.258-259.

80) 유진오, 『헌법해의』, 1952년 증보판, 명세당, p.177.

81) 같은 책, p.52.

고 강조했다. 이 정도가 국가보안법이 더럽히기 이전의 대한민국이 가진 기본상식이었다.

2008년의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 믿음에 사로잡혀있지만 이는 제헌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85조)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87조)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총자본의 92%가 일본인 소유였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덜 중요한 산업까지도 일본인의 수중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꼭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부를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 진영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었던 임시정부조차도 당당하게 중요 산업 국유화를 내걸었던 것이다. 제헌헌법 87조에서 “공공성을 가진 중요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은 당시로서는 사회주의국가인 소련과 삼민주의에 입각한 중국 두 나라를 제외한 각국 헌법에서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진보성을 표현한 일 규정”이라 할 수 있다.⁸²⁾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표방한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모든 토지의 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으로 국한되었지만 나름대로 계승되었다. 또한 지주로부터의 몰수와 농민에게의 분배의 방법은 각각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문제는 있었을지언정 대한민국 헌법은 농지는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승만 정권도 이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우파세력 내부에서 합의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었다.

3. 국가정체성과 국가보안법정체성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는 우파 블록 내에서 친일청산을 주장했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세력의 공격으로 몰락하면서 깨져버리고 말았다. 1949년 5월에서 6월은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친일청산을 주장해온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는 일련의 쿠데타적 사건들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국회 내의 소장파 의원들은 남로당 프락치라는 조작된 혐의를 뒤집어쓴 채 친일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의 비호를 받는 친일경찰은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이를 사실상 해산시켜버렸다. 그리고 보름 후 일제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이 친일파들에 의하여 암살당하고 말았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친일청산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이 과정은 친일청산의 좌절이라기보다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건전한 우파세력이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에 의해 역청산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82) 같은 책, p.183.

민족적 우과들이 제거된 1949년의 대한민국은 1948년의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다른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은 헌법보다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 장치에 의해 규정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상황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겠다고 제정되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임시조치법도 항구화되었다. 지금 뉴라이트나 집권세력이 '회복'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국가정체성이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정체성이 아니다. 이는 초헌법적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1949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정체성일 따름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정체성 하의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친일파의 득세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을 벗어날 수 없었다. 처음 전문 6조에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불과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9년 한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가둔 사람은 무려 11만8천6백명에 달했다. 국가보안법 하나만으로 일년에 12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들이니 전국의 감옥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었다.⁸³⁾ 이 엄청난 검거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을 최고 사형으로 올리고 단심제를 적용해 바로 사형을 집행하여 해결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국가보안법에는 일제의 예방구금을 이어받아 '보도구금'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엄청난 규모의 학살을 가져온 보도연맹사건의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학살 유해 발굴작업은 국가보안법 정체성에 의해 땅에 묻힌 1948년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발굴하여 복원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1958년 12월 24일 24파동으로 국가보안법의 폭압적 성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강화되었다. 이승만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다. 좌익전력을 지닌 박정희가 5.16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과 그 동생격인 반공법은 더욱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때로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등을 간첩으로 몰아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김성곤, 엄민영, 황용주 등 좌익전력을 지닌 여권 실력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동백림 사건에서는 지식인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었고 민비연 사건 등에서는 반체제 학생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정적,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학생운동가 등의 범위를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는 특무대, 방첩대, 보안사, 중앙정보부·안기부, 대공경찰 등 각종 공안기구가 비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남북 간의 치열한 대결 속에 서로 많은 공작원을 상대방의 진영에 침투시켰다. 그런 '간첩'들을 적발하는 데에서 거대화된 공안기구는 때로는 정권유지의 폭력적 수단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이후로 피차간에

83) 박원순, 『국가보안법』

별 효용이 없고 소모적이었던 공작원 침투를 중단함에 따라 공안기구는 그 존립 근거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 60년대까지도 억울한 조작간첩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간첩도 많았음을 차고 넘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한 당국에 적발된 간첩 건수는 각각 1,600건에 달했다. 그러다가 간첩 적발 건수는 1970년대에는 600명, 1980년대에는 다시 그 절반 수준인 300명 선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간첩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1972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직접 파견한 것이 확실한 직파간첩 숫자는 아무리 늘려 잡아야 5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70년대 후반 이후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간첩사건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⁸⁴⁾

4. 이식 민주주의의 토착화

1948년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정당 등 정치결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조선인들은 제국 의회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도 없었다. 식민 종주국인 일본 자체의 민주주의가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민주주의를 누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194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은 2차 대전의 종전을 전후한 시기인데, 한국은 1948년도에 자유, 보통, 비밀, 직접 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바로 채택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것은 1944년이였다. 1948년에 한국의 모든 성인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유럽의 일등 국가인 스위스에 비해 23년이나 빠른 것이었다.⁸⁵⁾ 서구 유럽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선각자들이 마녀로 몰리고, 또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여성 선거권만이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잔재라고 부르기에는 몸통까지 거의 그대로 살아있었던 상황에서,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다. 물론 우리의 독립운동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라는 성격이 내재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식’된 민주주의가 내면화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다. ‘주권자’인 국민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한 켄레의 고무신, 한 봉지의 밀가루, 또는 한 잔의 막걸리와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

84) 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제6권 - 학원·간첩 편』, 2007, p.257.

85) 「여성참정권」,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2936b>

았다.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란 것이었으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한국의 선거가 오래도록 금권, 타락 선거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이유는 정치인이나 유권자들, 또는 이들을 망라한 한국 사회가 특별히 부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식된 민주주의에 따라 온 투표용지라는 종이쪽지는 돈 봉투, 고무신, 막걸리, 밀가루보다 우리 생활에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에서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엄청난 변화는 전통적인 신분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한국처럼 빨리 그리고 완전히 전통적 신분제도가 힘을 잃은 나라는 없다. 카스트 제도나 불가촉천민이 살아있는 인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아직도 인권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동화 문제, 즉 한국의 백정에 해당하는 부랑민에 대한 차별 문제이다. 일본의 많은 홍신소들에게 결혼 상대방이 부랑민 출신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금도 큰 돈벌이이다. 한국의 신분제는 참으로 폭력적으로 허물어졌다. 사회를 바닥부터 뒤집어놓은 한국 전쟁에서 전선은 남해안에서 압록강까지 정신없이 이동했다. 인민군 점령에서 국군으로, 그리고 중국군의 진격에서 국군의 수복으로 정신없이 전선이 이동하는 가운데 신분 제도 등 낡은 유제는 그 뿌리가 잘려 나갔다. 더구나 극단적인 반동주의 하에서 치러진 민간인 학살은 이제 과거의 신분제가 완전히 힘을 잃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낫을 든 백정 우익이 빨갱이라는 감투를 쓴 양반을 찍어버려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율법이었다. 그리고 압축 근대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한국의 '초고속' 근대화 과정 속에 이미 마디마디가 잘려나간 옛 신분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구 신분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한국의 평등 사회가 도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돈'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새로운 신분제는 교육 평준화 등의 허술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미 우리 사회를 집어삼켰다. 이제 어떤 개천에서도 용이 났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신분 간 계층 이동을 위해 20세기에 잠시 열렸던 문은 21세기에는 굳건히 닫혀 있다.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신민당 - 민주당 - 평민당 - 국민회의 - 열린우리당 - 민주당 등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름이 바뀐 한국의 정당사는 정당 제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1948년 이후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문제는 선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경기 용인 출신으로 대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조병옥이나, 전남 신안 출신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김대중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의 정치는 출신 지역에 얽매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정화-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영남 출신들의 장기 집권 과정에서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했다. 수많은 '가신'들을 거느린 3김씨 등 '봉건 영주'의 절대적인 지배력 아래 한국의 정당 제도에서 계급을 대표한다는 정당 본연의 성격은 사라지고 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정당과 향우회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우

리의 정당 제도는 퇴행했다. 이렇게 정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 집회,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의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 촛불 시민들은 집에 가지 못하고 밤새워 촛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것이다.

1950년대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이 가득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하여 사사오입 개헌을 하기도 했다. 그런 한국을 보고 영국의 한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 못하다는 야유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만 7년이 안 되어 4월 혁명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선보였다. 그 이후 한국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황국신민’을 갓 벗어난 1948년 당시의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를 낯설어 했다. 한국은 현실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밑줄 짝 그어가며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1950~60년대 한국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도 없었고, 민주주의를 향유한 사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랬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는 언제나 한국의 저항 운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호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품어야 할 가치로서 내면화시키지는 못했다.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주의는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 민주 해방, 또는 민족 통일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경에 불과했다. 1948년도의 민주주의는 고무신 한 켤레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바뀌도 좋은 투표용지가 상징하듯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자나 장갑처럼 언제든지 더 좋은 것과 바뀌도 되는 그런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적어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들어왔다. 그러나 6월 항쟁 때 정말 비장하게 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시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젊은이들 중에 단 1분도 민주주의 속에 살아본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를 머리로 알 뿐이었다. 이 점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때 그 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먼저 촛불을 든 청소년들과 구분된다.

5. 사법부의 변화

사법부도 지난 6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갑오개혁 이후, 우리 손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땅에서 근대적인 사법제도는 일제 강점과 함께 본격화됐다. 조선인들의 저항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제는 순사와 감옥과 재판소를 ‘근대화’했다. 나치 잔재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독일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가 사법 분야였다. 한국에서 사법 분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였다. 한국에서 사법 분야는 법률용어, 관행, 분위기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일제잔재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이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1958년 진보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사법부를 적대시하여 5·16 군사반란 직후 대법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다.⁸⁶⁾ 1960년대 검찰은 권력의 수중에 장악됐지만 법원은 그래도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간신히 유지되던 사법부의 독자성은 1971년 사법부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장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행동을 벌인 이른바 ‘사법파동’의 실패, 그리고 이듬해 닥친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에 의해 유린되고 말았다. 박정희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손에 쥐었지만, 아직 법관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유신 헌법을 비방하거나, 헌법 개정을 청원하지만 하여도 사람들을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군인들이 재판장이 된 군법회의에 법관은 실무 전문가로 참여했을 뿐이다.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사법부가 완전히 길이 들었다고 판단하여 긴급조치 사건을 더 이상 군법회의에 맡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절의 시국 사건 재판은 많은 젊은 법관들에게는 상처였고, 또 일부 판사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였다. 이 무렵부터 이른바 ‘정찰제 판결’이란 말이 나왔다. 중앙정보부의 지침대로 검찰이 구형하면 판사는 구형량을 하나도 깎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뉴라이트에서는 유신 독재시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자유 정도는 누렸다고 강변⁸⁷⁾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말이 안 되는 시국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고려했던 판사는 친가, 외가, 처가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가해지는 압력에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대법원 앞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라는 고통 속에 술잔만 기울여야 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재판은 법률과 양심, 그리고 중정-안기부에 의해 이뤄졌다. 그 당시의 사법부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퇴진한 이영섭 대법원장의 퇴임사가 상징하듯 이 시기는 사법부에게 ‘오욕과 회한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법부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볼 수만은 없다. 사법부와 공안기관 간의 관계를 본다면, 사법부는 피해자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권력에 무저항 투항함으로써 판사들의 양심이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동안 죄 없는 시민들의 삶은 갈가리 찢겨져 나갔다. 하나의 간첩이 탄생하기 위해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1950년대에는 북에서 직접 납파된 공작원이 남쪽에 도착하여 몇 달이 지난 후에 검거되어도 그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미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 시절은 간첩도 실제 많았지만, 간첩죄도 나름 엄격히 적용되었다. 우리 헌법은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86) 이하 군사정권 시기 사법부에 가해진 외압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순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보고서 중 사법편, 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제4권 - 정치·사법 편』, 2007을 참조할 것.

87) 「역사교사들 ‘뉴라이트 역사관 못들겠다」, 『한겨레』 2008년 8월 2일자.

보안법에서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 등극했다. 무전기도, 난수표도, 암호문도, 독침도, 독약 앰플도 없는 간첩 아닌 간첩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법정에서 수십 일간의 불법 구금과 살인적인 고문을 호소해도, 판사들이 옷이라도 한 번 걷어보라며 고문의 상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죄가 선고되었던 송씨 일가 사건은 안기부의 전방위 압력에 의해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다. 공안기관의 압박은 이런 간첩 사건에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 운동 시위 사건은 물론이고 시국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즉심에까지 안기부는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대부분의 법관들은 묵묵히 그 압력에 따랐다. 그 결과 법정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신성한 법대” 위로 고무신이 날아다녔다. 피고인들이 당당하게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법관을 재판하는 것이 당시의 슬픈 풍경이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의 권력과 권위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법부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력으로 등장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내용은 지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헌법적 가치와 판단이 매우 중요시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인치’를 벗어나 법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욕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슬픈 시대에 대한 반성도 청산도 없이...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권위가 신장된 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민주화는 군사독재 정권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정치권력이란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한시적인 권력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행사 범위와 방식을 철저히 규제했다.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에서 가장 덕을 본 것은 주권자인 일반 시민보다도, 교체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수구 기득권 세력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의 총선 결과 국가 권력 중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민주개혁 진영의 손에 들어갔다.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권력 중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있는 국가권력이란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사법부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수구세력이 탄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2004년도에는 사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국가보안법,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이는 수구세력이 국가권력 중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진영에 내준 상황에서, 수구세력으로서의 사법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6. 군국소년들이 만든 나라

대한민국은 ‘군국소년’들이 만들고 지켜온 나라다. 일본제국주의는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과 조선의 어린 소년들을 예비 군인으로 키워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의 군국소년들은 더 이상 군국주의 교육을 받지도, 실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다. 연합국은 일본에서 군국

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꼭 이 프로그램 덕분이 아니더라도 패전의 고통 속에서, 일본국민들은 군국주의자들이 하자는 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국민 모두가 큰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패전의 경험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군국소년들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해방 당시에 열다섯 살 전후의 군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한국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 정전 이후 어쩌면 지금까지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일본제국주의가 심어준 군국주의적 교육의 영향을 차분히 되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박정희를 사령관으로 하는 병영국가에서 이들은 산업전사가 되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했다. 이제 팔십을 바라보는 '군국노인'이 된 이들은 여전히 시청 앞에 군복을 입고 나타나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전쟁은 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정부수립 이후 채 2년이 안 되어 한국전쟁을 치른 우리에게 전쟁의 기억과 군대의 경험은 우리의 모습을 빚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국군은 창설되자마자 전쟁을 치렀다. 군대에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은 단체 생활의 규율도, 시간관념도, 전기와 전화 등 근대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을 초단기간에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에서는 심각한 구타와 가혹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한국군에서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매년 약 1천 명 내외의 젊은 목숨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희생되었다. 이 숫자는 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2000년대에는 100-150명 선으로 급감했다.⁸⁸⁾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민주화의 결과 민간 사회가 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한국은 전쟁 기간 중에 징병제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군의 규모는 전쟁 중의 대부분의 기간 20만 안팎이었지만, 1952년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전 무렵에는 35만, 1954년에는 60만 대군이 된 이후 거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인구는 2천만에서 5천만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인구증가, 경제성장, 교육수준의 결정, 민주화와 인권의식의 심화, 과학기술의 발달, 남북관계의 개선, 전쟁개념의 변화 등등 수많은 요인은 병역제도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 구타와 가혹행위가 줄어든 것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의 본질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8) 군대 내 사망사고 통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6쪽을 참조할 것.

7. 산업화와 민주화

1945년 이후 지구상에 출현한 수많은 국가들 중 민족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세력이 집권한 나라는 단 두 나라뿐이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였던 남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에 흡수통일됨으로써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남은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다. 사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집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과 남베트남에서 제국주의 협력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나라들이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두 세력은 새로운 외세와 손잡고 분단된 나라의 남쪽을 각각 차지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볼 때 제국주의 협력세력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새로운 나라의 집권세력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분단과 외세의 점령에 기인한 것이다.

해방 당시의 한국은 일제의 착취에 의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한국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한국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주민들에게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택해서 배를 굶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택할 것인가를 강요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민주화냐 경제성장이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궤도에 들어선 이후를 본다면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박정희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논리, 즉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짓신화를 현실경험 속에서 깨부순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박정희의 협박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87년의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오랜 기간 억눌렸던 분배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존망의 기로에 선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보호할 수 없었다. 민주화가 가져온 일시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폭발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정전 이후 1987년까지 34년 동안 약 3,0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 7·8·9월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석 달 간 일어난 쟁의만 약 3,000여건에 달했으며, 많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노동자들은 이들 노동조합을 통해 보통 4-50%를 상회하는 과감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런 현상은 보수세력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대연합을 이룰 때까지 적어도 2-3년간 지속되었다. 이 성과는 전 세계에서 1989년 동구의 현실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도 한국의 민중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또한 민주화가 생산대중의 소득과 구매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분명 어두운 면은 존재했다.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과 임금인상의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린 집단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었다. 90년대 보수대연합으로 안정을 찾은 자본은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되찾았고, 잠시 열렸었던 분배의 기회는 다시 좁아지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은 이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막대한 노무관리 비용 - 그러나 과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비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금액 - 을 지출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므로써 임금인상의 폭을 한자리수 이하로 묶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외환위기의 여파 이후 기업들은 임금이 인상된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하청, 도급,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채용하였다.

8. 민주화운동과 현대 한국

대한민국사를 관통하는 힘은 역시 민주화운동이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에게 빼앗긴 대한민국, 국가주의자들이 장악한 국가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찾아오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친일파들의 쿠데타, 그리고 전쟁과 학살로 인하여 1945년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민주역량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60-70년대 이후 한국에 다시 출현한 민주세력은 해방공간의 좌파 또는 진보 세력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70년대 이후 재야 민주세력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해방공간에서 좌파 또는 진보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우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 장준하는 극우단체 민족청년단의 핵심 간부였고, 함석헌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 사상가였다. 문익환, 박형규 두 분 목사는 미군 통역장교 출신이고, 계훈제는 우파 주먹패인 반탁학련의 행동대장이었다. 또 리영희는 한국전쟁 중 국군장교 출신이었고, 시인 김수영은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탈출한 반공포로 출신이었다. 이렇게 확실한 우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재야 또는 진보파가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⁸⁹⁾

새는 좌·우 두 개의 날개로 나는 법이다. 전쟁과 학살로 인한 민주·진보 세력의 철저한 파괴는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보수 세력이 출현하는 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친일 세력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들은 반공지상주의와 한미동맹을 내세웠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통해 진보 세력과 경쟁하는 대신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 공안기관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이들에게는 논쟁도 토론도 필요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저거 빨갱이 아냐?” 라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붉게 칠해 버리는 색깔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관용이나 사상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에서 군사독재정권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 것이었으나, 또한 기독교 세력의 지적 빈곤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89) 출처, 『대한민국사』 1, 2003, 한겨레신문사,

해방공간에 형성된 민주역량·민중역량이 전쟁과 학살로 파괴된 뒤, 민주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이 많았다. 70년대까지도 대학생은 한국사회에서 선택받은 소수였다. 이들은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이라 했던 전태일의 마지막 소망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다. 학생운동 출신의 운동가들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쓸 나 무도 알고 있는 슬기로운 머리로 잠 한숨 못자고 술 기울이며” 민중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아직 계층간 사회이동의 장벽이 높지 않았던 시절, 가난한 집의 우수한 아이들은 명문 대학을 나와 엘리트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또 민중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곤 했다. 이런 민중지향성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부르주아적, 엘리트적인 운동에 머무르지 않는 안전장치로 작동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민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화운동 출신들 상당수가 정권요직에 진출하고, 또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오랜 기간 견지했던 민중지향성은 급속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민중들은 참으로 끈질겼고,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인들이 절망했던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민중들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1959년 조봉암이 사형당하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후보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했다. 야당에게는 1956년 신익희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뒤이은 돌이킬 수 없는 악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만 7년이 안 되어 4월 혁명이 일어났다. 긴급조치 아래에서 모든 반정부활동이 얼어붙은 듯 했던 1979년 여름, YH 여공들의 농성은 불과 두 달여 만에 철용성 같던 유신체제를 무너뜨렸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희생될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은 지리멸렬했었으나 불과 5개월여 만에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⁹⁰⁾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한 암울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친일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한국민주화운동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성취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환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도의 탄핵은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이런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거리의 정치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도의 촛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60-70년대의 공안국가, 토목국가의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권을 향해 와이브로와 발랄함으로 무장한 21세기의 시민들은 유쾌한 저항을 시작했다. 이 저항에 맞서 이명박 정권은 배후가 누구냐는 국가보안법의 낡은 공식을 들이밀며 백골단을 부활시키는 5공화국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에게 지난 석 달간 거리에서 엄청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쇠고기를 강요하는 자들이 바로 대운하를 파자고 하는 자들이고, 의료민영화를 하자

90) 줄고, 「현대 한국의 저항운동과 촛불」,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

고 하는 자들이고,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이고, 교육자율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는 세력이 바로 조·중·동이고, 이들의 뿌리가 바로 친일파였음을 깨달았다. 대중들은 지난 석 달간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각각 세계 11, 12위권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2차대전 직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룬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한국 민중은 많은 과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고, 비정규직 문제 등 예상치 못했던 과제들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국가보안법에 사로잡혔던 대한민국을 지금 이 정도나마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킨 것은 민중들의 역동성이었다. 지금 다시 촛불을 든 대한민국이 이 활력을 계속 유지하여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촛불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종합토론문

김상봉 / 전남대 철학과 교수

1.

1948년 8.15의 재인식 문제입니다. 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분단 시대의 개막으로 인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수립의 해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48년의 시점에서, 그리고 2008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분단시대의 개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단순히 대한민국의 역사로만 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분단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정치라 한다. 수많은 만남들이 서로 얹혀 일정한 형식과 외연 속에서 통일성을 얻을 때, 그것이 나라이다. 참된 만남은 너와 내가 누구도 일방적으로 객체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 주체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만남의 진리는 서로주체성에 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너와 나들이 모여 참된 만남 속에서 서로주체성의 현실태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나라인 것이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온전한 의미에서 서로주체성의 현실태였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홀로주체의 사적 점유물이 되어버리면 그런 나라는 온전히 존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때 한 국가는 자발적인 만남의 욕구에 의해 생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타율적 강제와 폭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집합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폭력만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 그런 경우 나라는 계급투쟁이나 내전 상태에 빠져들어 결국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데 너무도 불행한 일이지만 1800년 정조가 사망한 이래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씨을과 국가기구 사이의 잠재적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까닭은 이 땅의 국가기구라는 것이 한 번도 우리 모두의 나라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국가는 때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의 통치기구였을 뿐이다.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한 ‘그들’에게 씨을들은 국가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착취와 수탈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씨을들이 국가의 야만적 억압과 폭력에 저항할 때, 국가의 지배자들은 저항하는 민중들을 서슴없이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하는 짓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가 이 나라의 지배계급은 자기 국민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는가? 그 까닭은 예로부터 이 나라 지배계급이 숭상하는 유일한 정치적 이상이 사대주의이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란 말 그대로 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인데,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서 몸을 낮추는 것은 일종의 생존의 지혜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배계급에게 사대주의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외세에 굴종하여 그 하수인이 되는 대가로 자기들이 내부의 권력을 독점하고 같은 겨레를 노예로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아는 한, 이런 사대주의가 한 나라의 정치적 전통으로 굳어진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다.

서양에서 공화국의 기틀을 놓았던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로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대부분 영세농이었던 그들은 자기 땅을 경작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을 뿐이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전쟁을 통해 조달했다. 로마에서는 아예 귀족이 자기에게 딸린 평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평민은 자기의 후견귀족에게 투표하는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기까지 했다. 시대에 따라 겉모습은 변해왔지만, 외국을 침략해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양의 정치적 전통인바, 이런 전통에 기대어 그들은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내적통합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지배계급이 차라리 외세의 하수인이 될지언정 같은 겨레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나라를 만들려 하지 않는 곳에서, 외국군대에 의지하여 동족을 오직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나라에서, 씨을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처음에 동학농민전쟁이 반봉건항쟁이

었다면, 3·1운동은 그에 더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으며, 해방 후 이번에는 미국의 힘에 기댄 독재자들 아래서 민중항쟁은 반봉건, 반제에 더하여 반독재투쟁이 되어야 했으니, 이 역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보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중첩되고 착종된 사회악과 맞부딪치게 되고 마침내 원하든 원치 않든 인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본질적인 모순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때마다 가장 강한 외세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나라 지배계급의 고질병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외세의 직접적인 수탈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시사HN』 39호

2.

48년 이후 대한민국 60년의 역사에서 성취의 큰 줄기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남북화해일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만약 이를 성공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내용과 주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요, 또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의 내용, 원인, 과정,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규정은 역사이해를 위해 아무 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하나의 민족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씨울과 지배계급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역사적 주체가 전혀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각축해온 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두 지향이 홀로주체성과 서로주체성입니다. 지배계급은 지속적으로 민중을 타자화, 대상화, 도구화하는 홀로주체로서 군림하려 하는 반면, 민중은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서로주체성을 실현하려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잠재적 전쟁상태 속에서 각축해온 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건국 이후 수차례의 헌법 개정 중에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바대로 민주공화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헌법 1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리고 희망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을 일러 정치라 합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이어져 정해진 외연과 형식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룰 때 그것을 가리켜 나라라 합니다. 참된 만남이란 너와 내가 누구도 일방적으로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 주체인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만남은 언제나 서로주체성의 실현에 준립합니다. 나라 역시 만남의 총체인 한에서 모든 너와 내가 누구도 도구나 객체로 전락하지 않고 서로주체성을 실현할 때 참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보이지 않는 만남의 총체일 뿐 사물적 실체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의 총체인 나라가 추상적 의지가 아니라 현실적 권력의 주체로서 사물화된 것이 국가입니다. 어떤 시민도 자기 혼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까닭에, 자신의 주체성의 일정한 부분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주체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그 자체가 자기의식을 가진 주체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누군가가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국가기구이며 대의 정부입니다.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며 그 정당성 역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국가 및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 시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것인 까닭에, 그것은 오로지 국민 전체의 주체성을 대변하고 시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한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한 개인에 속하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만남의 총체인 한에서 국가의 권력 및 정부의 모든 일과 정책의 정당성은 국가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를 위한 나라를 지향하는 의지와 실천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나라를 지향하는 국가를 가리켜 공화국이라 부르는데, '모두를 위하여 있음'이라는 공화국의 존재방식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만약 국가의 권력이 민주주의 및 공공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집단의 독단에 따라 그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때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상실되고 국가의 권력은 한갓 폭력으로 전락하고, 정부란 본질적으로 조직폭력배의 무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국가권력이 모두의 뜻에 따라 모두를 위해 행사될 때, 국가는 온전히 민주공화국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는 이처럼 민주성과 공공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고 이념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오랫동안 공허한 이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식민지에 지나지 않았던 까닭에 국민의 뜻과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과 이익에 따라 나랏일이 좌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의 하수인들에 지나지 않았던 이 나라의 지배세력의 뿌리는 불행하게도 친일파들이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마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대가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나라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보장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이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것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에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월남 파병을 자청한 것에서 보듯이, 국가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뜻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이 초래하는 모든 국민적 불행은 이처럼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외세에 기대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그렇게 확보한 국가 권력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독재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면서, 제주도 4.3사건이나 5.18 광주항쟁에서처럼 국민들이 거기 저항할 경우에는 서슴없이 그들을 적으로 삼아 총부리를 돌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외세를 상전으로 삼고 도리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지배 세력의 사대주의야말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처럼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독재권력에 저항하여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자유를 확장해 온 역사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서 시작하여,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79년 부마항쟁을 거쳐, 87년 6월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독재정부를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념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근본 가치로서 한 사회는 자기 나름의 공공적 이념을 공유함으로써만 그 바탕 위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 되고 잘 살고 싶다는 욕망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이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모두를 위한 나라, 곧 참된 의미의 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이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철저히 사적인 소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부자 되겠다는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분열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길로 더불어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돈 이외의 다른 가치를 찾을 줄 몰랐으며, 그 결과 사회는 야수적 생존 경쟁의 장이 되어버리고 나라는 기업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앞 다투어 CEO의 흉내를 내더니, 모든 공공기관의 장들은 물론 급기야는 학교의 장들까지 CEO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대통령 역시 기업의 경영자와 다름없이 여겨지는 것이 작금의 세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CEO를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가가 단지 이윤을 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의 이윤을 넘어선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을 구별 않고 오로지 이윤만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하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고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만 현혹되어 집권당을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윤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이윤을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며, 이윤을 위해 학교를 시장으로 만들고, 이윤을 위해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고, 이윤을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이윤을 위해 환율을 올리고, 이윤을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서두르고, 이윤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함석헌이 말했듯이 “기업국가”를 극복하고 참된 의미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약자를 위한 나라일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화국이 문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쟁원리가 아닌 약자와의 연대와 사회적 협력과 상생의 원리에 입각해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토론문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1948년 8.15의 재인식 문제입니다. 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분단 시대의 개막으로 인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수립의 해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48년의 시점에서, 그리고 2008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1-1.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국가란 무엇인가의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국가의 구성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으로 볼 경우 1948년 8월 15일은 ‘나라 세우기’로서의 ‘건국’의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한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출범은 북한 지역에서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분단 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문제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기준이 유럽적 기준, 다시 말해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들의 기준이라는 점에 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이 세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은 채 국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의 기원은 독립선언을 한 1776년인가, 독립전쟁이 끝난 1783년인가, 필리핀 건국의 기원은 독립을 선언한 1898년인가, 미국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난 1945년인가. 두 나라에서 건국의 역사적 기원은 각각 1776년, 1898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건국(nation-state building 또는 modern state building)에서 비유럽 사회의

경우 '영토, 국민, 주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근대(premodern)와 근대(modern)를 구별 짓는 국가정체성(state identity)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느냐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 근대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에서 전근대와 구별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채택 여부에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우 그것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된다.

1-2. 이런 맥락에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의 한 과정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역사에서 단절은 없으며, 전환과 전환의 계기가 있을 뿐이다. 1897년 선포된 대한제국,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 1945년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 1948년 이루어진 정부 수립이라는 전환들과, 이 전환들에 기반한 연속으로서의 건국의 역사가 존재한다. 앞서 지적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유럽 사회에서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임시정부 수립, 해방, 그리고 정부 수립을 하나의 연속으로 이해해야지 이를 분리시켜서는 안되며, 바로 이런 문제의식과 역사인식이 '광복절'이란 말에 온전히 담겨 있다. 이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건국절'은 역사에 대한 일면적이지 과잉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1948년 한반도에서 세워진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정통성이다. 정통성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한편에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범적, 결과적 정당성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을 비교할 때 특히 규범적, 결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 규범적, 결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균형감각이다. 역사 해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산업화를 중시하는 이들이나 민주화를 중시하는 이들 모두 우리가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가 세계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앞선 이들의 땀과 노고, 희생이 오롯이 담긴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역사를 일방적으로 찬양할 필요 또한 없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 수립,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 이면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크고 작은 희생들이 존재했다. 과거의 오류를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점에서 '자학사관'이든 '찬양사관'이든 그런 편향된 인식틀들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2. 48년 이후 대한민국 60년의 역사의 큰 줄기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일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만약 이를 성공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내용과 주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요, 또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의 내용, 원인, 과정,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2-1.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사회를 기다린 것은 격동의 현대사였다. 냉전과 분단의 그늘이 짙어진 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참으로 험난한 건국 과정이었다.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성취했으며 통일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셈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두 개의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였다. 세계시간 속에서 뒤쳐졌던 만큼 그것은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로 진행되었다. 추격산업화는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가 추격산업화의 요체였다. 성장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경제적 삶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추격산업화의 정당성은 이내 고갈되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보한 채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바로 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전두환 체제를 승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추격산업화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여전히 논란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의 다수는 박정희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반면, 지식사회에서는 거부 경향이 두드러진다.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이 현재의 곤궁(困窮)으로 인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지식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발전을 지지해 왔다.

추격민주화는 추격산업화 안에서 배태되었다. 군부권위주의는 민주화를 일시적으로 지체시켰지만 역사는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추격민주화를 주도한 주체는 사회운동이었다. 분출하는 사회운동들은 민주제도를 요구하고 또 만들어냄으로써 서구민주주의를 단숨에 '추격'하고자 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2002년 11월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대내적인 민주화와 대외적인 자주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추격민주화에도 그늘이 없지 않았다. 정치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거리의 정치'가 '제도의 민주주의'로 쉽게 전화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역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온 것은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민주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조건에서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2-2. 60년이란 '자연적 시간'은 장구한 역사에서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시적 사회변동에서 볼 때 지난 60년 동안 진행된 '사회적 시간'이 결코 짧은 것도 아니다. 정부 수립 60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동안 추구해온 산업화와

민주화가 결코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를 확장하기도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배제한 경제성장 또한 이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문제는 산업화와 민주화 중 어느 하나의 논리만을 강조하고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성장과 인권, 효율과 형평,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을 특권화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산업화, 새로운 민주화의 상생(相生)적, 시너지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건국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부 수립 60년이 주는 현재적 과제일 것이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건국 이후 수차례의 헌법개정 중에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바대로 민주공화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헌법 1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리고 희망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3-1.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통치되는 국가라는 의미일 터이다. 민주주의란 demos(민중)의 kratos(지배)를 뜻하며, 공화주의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한 권력의 공유를 뜻한다. 다시 말해, 민주공화제의 핵심은 권력이 국민 다수에 의해 소유되는 것에 있다. 근대 프랑스 혁명에 그 역사적 기원을 두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이 일인 내지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독재의 반대말이며, 동시에 왕의 존재를 승인하는 제국의 반대말이다(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대영제국이라고 하지 대영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진술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실판단으로서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군사독재는 권력이 일인 내지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었다고 볼 수 없다(유신 시대와 전두환 시대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가치판단으로서의, 가치지향으로서의 의미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국가권력에 의해 부정될 경우 국민 다수는 사회운동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지켜내고자 한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에도 국민은 개인적, 집합적 저항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수호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진술은,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한 때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치판단의 관점에서는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2. 2008년 봄과 여름,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울려 퍼진 ‘헌법 제1조’의 노래는 우리의 정치 및 사회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합법적 권

력인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을 위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동시에 당연한 의무이다.

어느 나라이건 민주공화국은 사회제도와 사회운동이란 이중적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4월 혁명이 없었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촛불운동이 이런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사회운동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점에서 현재 우리 민주주의에 부여된 과제는 사회운동으로 표출된 열망을 제도가 어떻게 적절히 수용할 것인가, 사회제도와 사회운동 사이의 생산적 긴장과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론> 이육사의 ‘꽃’과 역사에 대한 예의

최근 건국을 둘러싼 논의를 지켜보면서 머리 속에 맴돌았던 말은 ‘역사에 대한 예의’이다. 역사는 현상과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개인적, 집합적 주체의 꿈과 좌절, 희망과 절망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우리 모더니티의 역사는 다름 아닌 봉건 지배에 맞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개인적, 집합적 주체들이 싸워 온 역사이자, 식민 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역시 개인적, 집합적 주체들이 투쟁해 온 역사다. 1945년 해방의 배경,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여러 해석과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을 위해 헌신해온 개인적, 집합적 주체들에 대한 기억이다.

이육사 선생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시인이자 의열단 단원이었다. 선생은, 내가 아는 한 엄격한 의미에서 좌파도 아니었고 우파도 아니었다. 조국과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생은 1943년 6월에 동대문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 이듬해인 1944년 1월 마흔 살의 나이로 베이징 감옥에서 안타깝게 옥사했다. 이 땅에서 살아 온 이들이라면 선생의 ‘청포도’, ‘절정’, ‘광야’ 등의 시를 배움으로써 조국 해방을 위해 헌신한 선생의 절망과 희망을 배워 왔다. 아래의 ‘꽃’은 선생이 남긴 작품의 하나이다.(일제 시대에 씌어진 이 작품은 해방된 1945년 12월 자유신문에 발표되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생은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에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렸으며,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으로서의 해방을 간절히 염원했다. 선생의 삶과 시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지금 나는 역사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민족주의에 대한 일면적 해석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계 숫자로만 이해하려는 이들, 역사를 제도의 변화로만 해석하려는 이들, 그리하여 역사 속에 놓여 있는 개인적, 집합적 주체들의 꿈과 열망을 과소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부정하려는 이들이 갖는 편협한, 반(反)역사적인 역사의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역사에 대한, 역사 속을 당당하게 걸어온 우리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